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현길아

2013년 8월

제주지역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 연구

지도교수 이 인 회

현 길 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현길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梁 鎭 休
위 원 박 정 권
위 원 이 인 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8월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4.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학교무상급식 제도의 배경	6
2. 우리나라 학교무상급식 제도	8
3. 제주지역 학교무상급식	12
4. 외국의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18
5. 선행 연구의 고찰	19
III. 연구방법	22
1. 연구 대상	22
2. 연구 도구	25
3. 자료 분석	25
IV. 연구결과 및 해석	26
1.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인식	26
2.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무상급식 재원에 대한 인식	36
3. 학교무상급식의 문제점 인식에 따른 발전방안	55
V. 결론 및 제언	71
1. 요약	71
2. 결론	76
3. 제언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4
부록 1.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87
부록 2.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기타 통계 자료	95

표 목차

<표 II-1> 2013년 3월 전국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 현황	12
<표 II-2> 제주지역 학교급별 설립주체별, 학교 및 학생수 현황	14
<표 II-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규모	15
<표 II-4> 제주지역 학교급식 주요 연혁	16
<표 II-5> 제주지역 무상급식 현황	17
<표 II-6> 제주지역 무상급식비 재정 부담 현황	18
<표 II-7> 학교급별 1식당 지원 단가	19
<표 III-1> 교사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24
<표 III-2> 학부모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25
<표 III-3> 설문지 영역별 문항 구성	26
<표 IV-1>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성(교사)	27
<표 IV-2>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성(학부모)	28
<표 IV-3>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성	29
<표 IV-4>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한 이유(교사)	30
<표 IV-5>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한 이유(학부모)	32
<표 IV-6>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한 이유	33
<표 IV-7>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교사)	34
<표 IV-8>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학부모)	36
<표 IV-9>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	37
<표 IV-10>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교사)	38
<표 IV-11>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학부모)	39
<표 IV-12>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	41
<표 IV-13>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교사)	42
<표 IV-14>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학부모)	43
<표 IV-15>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	44
<표 IV-16>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비율(교사)	45

<표 IV-17>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비율(학부모)	47
<표 IV-18>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비율	49
<표 IV-19>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교사)	51
<표 IV-20>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학부모)	52
<표 IV-21>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	53
<표 IV-22>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교사)	54
<표 IV-23>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학부모)	55
<표 IV-24>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	56
<표 IV-25>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교사)	57
<표 IV-26>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학부모)	58
<표 IV-27>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	59
<표 IV-28>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교사)	60
<표 IV-29>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학부모)	61
<표 IV-30>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	62
<표 IV-31>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교사)	62
<표 IV-32>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학부모)	63
<표 IV-33>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	65
<표 IV-34>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교사)	66
<표 IV-35>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학부모)	67
<표 IV-36>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	69
<표 V-1> 학교급식의 필요성	89
<표 V-2> 학교급식이 필요한 이유	90
<표 V-3>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생각	91
<표 V-4> 학교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 도움 여부	91
<표 V-5> 과거 학교급식비 납부 부담여부	92
<표 V-6> 제주지역에서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	92
<표 V-7> 국가의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중요성	93
<표 V-8> 학생 1인 1식당 학교급별 학교급식비 적정 금액	94

【국문초록】

제주지역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 연구

현길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이인희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어 2011년 개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제주지역 역시 2011년 3월 개학을 시작으로 유치원(사립·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으나 2012학년도에는 재정 부족으로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하지 못하고 동지역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왔다.

제주지역에서는 2012년도에 중학교까지의 전면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는 크게 대립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가지고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였으나, 제주도의회에서는 전면 실시를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논쟁을 벌여 오다가 2012년 1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2013학년도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을 분석하고 그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여 학교무상급식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영양교사 배치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교사 166부, 학부모 163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 모두 중학교까지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무상급식 대상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어 학교무상급식 제도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는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해서는 ‘50%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중점적으로 고려할 측면’에 대해서는 ‘복지적 측면’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학교무상급식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증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는 ‘3% 내외’라고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교원이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였고,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가 불가피하므로’라고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6.25전쟁 이후 국제연합아동구호기금(UNICEF)의 초등학교 탈지분유 급식사업과 미국 등의 잉여농산물을 지원받아 빵 급식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1972년 미국 등의 유·무상에 의한 잉여농산물지원이 단절되자 학교급식정책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형태에서 정부차원의 국가 재정과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는 학교급식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76년 도서벽지학교(분교 700여개교)에 시설비 지원을 통한 조리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1977년 「학교급식규칙」(1977.1.14 문교부령) 제정으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1981년 「학교급식법」이 최초로 제정(1981년.1.14 법률 제3356호)됨으로써 급식의 체계 구축과 양적 확대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 2003년부터는 전국의 초·중·고·특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학교급식은 학부모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하게 되었다(김한순, 2011).

「학교급식법」의 제1조에 의하면 동법은 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2조에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또는 학급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의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동법 제52조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제주지역 학교급식은 1974년 어도교를 시작으로 1992년 초등학교 전면 학교급식 실시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당시 교육부와 교육청,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통해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995년 제주도지사의 선거 공약과 교육부, 교육청, 학부모의 지원으로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 계획이 수

립·추진되어 전국 최초로 초·중·고·특수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4년 7월 21일 전국 최초 주민 발의에 의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되어, 2005년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모든 학교가 받아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탐라교육원, 2010).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기 12~13년간을 매일 1끼 또는 2~3끼까지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정부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식비는 수익자부담 원칙하에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하봉운, 2011).

무상학교급식이라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급식관계자, 국민 등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 계층에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급식의 사회적 비용 편익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비용보다 편익이 크고, 다른 정책에 비하여 편익이 정도가 크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여러 검증을 거쳐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무상급식 정책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백승희, 2010).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어 2011년 개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제주지역 역시 2011년 3월 개학을 시작으로 유치원(사립·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으나 2012학년도에는 재정 부족으로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하지 못하고 동지역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왔다.

제주지역에서는 2012년도에 중학교까지의 전면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와의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가지고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제주도의회에서는 전면 실시를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논쟁을 하여 오다가 2012년 1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2013학년도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지역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과 학교급식의 부담 주체인 학부모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 배치교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인식은 배경변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무상급식 재원에 대한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전면 학교무상급식제도의 문제점 인식에 따른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제주지역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여 무상급식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향후 제주지역의 무상급식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학교 영양교사 배치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 무상급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의무교육

의무교육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받아야 하는 의무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그리고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학교급식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이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

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다. 무상 급식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학교급식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하는데, 무상급식은 이 경비의 부담을 수익자인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담하여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무상급식 제도의 배경

가. 도입과 배경

세계 최초의 학교급식은 1790년 독일 뮌헨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구호할 목적으로 스프급식에서 시작하여, 1853년 미국 뉴욕시 아동보호원에서 자원자들에게 학교급식 실시와 1864년 영국 런던시의 빈곤 아동급식 협회 설립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단체의 구호급식으로 확대되었다(조정순, 2011). 이는 우리나라보다 100~160여년 앞서 학교급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스웨덴은 1845년 유치원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을 점차 확대 실시하였으며, 1945년 의회의 무상급식 결정으로 1946년부터 무상급식이 도입되어 영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1943년 무상급식 관련법을 제정하고 1948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하여 초·중학생에게 완전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도 무상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급식지원은 학생(보호자)의 부담 정도에 따라 무상, 할인, 유상 등 3종류로 구분되며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가계소득 및 가족수가 고려된 연방빈곤지표(Federal Poverty Guideline)를 근거로 결정되며, 2008년에 점심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급식 참여 학생수 3,100만명 중 1,540만명으로 약 50%정도 수준이다(이덕난, 2010).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의 어려움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1999년 학교급식법 개정(7차개정, 1999.8.31.)을 통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시·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중에서 그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업일의 점심 시간에 주식 및 부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자 (이하 급식지원 대상 학생)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 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급식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1년 경기도 과천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최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순영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를 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5년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최초의 농산어촌 무상급식을 실시를 시작으로 2009년 전국 11개 시·도에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1,812개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2009년 안민석의원과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에서 주최한 무상학교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실시한 토론회에서 국가의 책무성 실현 차원에서 급식시설비 및 운영비, 식재료비를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나. 국가의 역할

외국의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경비지원과 부담주체별 분담비율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경비지원을 위한 행정체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연방 농무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독일은 주정부 교육담당부처,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자체의 교육담당 부서, 독일은 주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급식 경비를 보조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부담주체별 분담 비율을 보면, 미국은 연방정부가 50.6%를 부담하고 학부모와 주 및 지자체가 각각 24.2%와 8.8%를 부담하며 일반인 대상으로 한 영업 수익 등 자체수입은 15.8%이다(Bartlett, Susan et al, 2008). 독일은 문화고권(Kultushoheit)에 따라 교육이 주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16개주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경비 지원에 차이가 크다. 구서독지역의 라인란트 팔츠 주는 90%이상을 지원하는데 비해 구동독지역의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주는 10-20%만 지원하고 있다(HAW Hamburg, 2008). 스웨덴은 지자체가 100% 부담하고, 핀란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42%와 58%씩 부담하고 있다(이덕난, 2010).

우리나라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단계의 급식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의무교육을 대상으로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하는데도 2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덕난, 2010).

18대 국회에서 2009년 발의된 권영길의원, 김춘진의원, 백재현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들을 보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부담급식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영길의원안(2009.4.23.)에서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춘진의원안(2009.9.29.)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의무교육대상자는 모든 급식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급식운영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며, 그리고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의 급식운영비 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백재현의원안(2009.12.23.)에서는 학생들의 건강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발의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모든 급식 경비를 지원할 경우 2조원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학교무상급식 제도

가. 도입과 배경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무상의무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까지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여러 부분의 교육비를 징수해 왔다.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 제기는 안전한 ‘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2004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최순영의원 대표 발의)하여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전환, 무상급식의 확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고, 2004년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와 2007년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 및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이덕난, 한지호, 2010).

2009년 안민석의원과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에서 주최한 “무상학교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한 토론회에서 학교급식을 제도화한 국가가 책무성 실현 차원에서 급식시설비 및 운영비와 식재료비를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안민석의원실, 친환경무상급식을위한경기운동본부, 2009).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18대 국회에서 6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3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건의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이 발의되었다(이덕난, 한지호 2010).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3월 16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까지 26%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김상곤(2011)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4가지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첫째,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는 것으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므로 마땅히 국민의 권리 영역이며 동시에 정부의 책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둘째, 무상급식은 국민 대다수가 그 취지에 공감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무상급식이 사회적 의제가 된 이후 많은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복지’에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셋째, 무상급식은 과도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양극화를 줄이는 길이고, 넷째, 무상급식은 전체 국민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임과 동시에 선순환 성장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백승희(2010)는 무상급식은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되어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수치심과 가난으로 인한 열등의식, 위축감 등은 건전한 정서 발달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고른 신체 발달 및 건전한 정서발달과 같은 건강증진 측면에서 무상급식을 국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무상성’이 의무교육의 핵심 기능으로 보고 학교급식을 제도화한 국가가 책무성 실현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확충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학교무상급식 실시 현황

2001년 경기도 과천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전국 11개 시·도에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1,812개교 24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왔다. 2010년 8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건의했다.

2012년 3월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 11,373개교 중에서 7,785개교(68.5%)가 전체 또는 일부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5,921개교 중 5,392개교(91%), 중학교 3,161개교 중 2,161개교(68.4%), 고등학교 2,291개교 중 232개교(10.1%)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 9월 24.4%에서 2012년 3월 91%로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9.9%에서 68.4%, 고등학교는 3.6%에서 10.1%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 9월 11,196개교 중에서 1,812개교(16.2%)가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에 비해 4.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북(89.6%)이 가장 높고 전남(87.6%), 제주(83.6%), 충북(82.5%), 경기(81.0%) 순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80% 이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반면, 대구는 5.1%, 울산이 29.8%에 불과하였다(김춘진, 2012). 그러나, 2013년 3월에는 초등학교 100%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고, 중학

교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에서 8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이 3월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과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현황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42곳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114곳에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상급식 비율이 68.1%에 이르는 것으로 제주, 세종, 강원도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 밖의 시군구에서는 부분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인 경우 2013년 3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산지역은 16개 시군구에서 기장군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군구에서는 부분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울산지역 5개 시군 중에서 울주군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4곳(중구, 동구, 북구, 남구)에서는 부분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초등학교인 경우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 실시율이 100%에 달하고 있다.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대전지역은 단 한곳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지역 역시 기장군만 부분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낮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6월 중학교무상급식 비율 71.6%보다 13.1%가 증가한 84.7%가 전면 또는 부분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인 경우 전면 실시 37곳 부분실시 33곳으로 전남지역은 22개 시군구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전면 실시 7곳, 부분 실시 7곳이며 경남지역도 18개 시군 가운데 전면 실시 10곳과 부분실시 8곳이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2013년 3월에는 2012년 6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율 18.3%보다 12.7%가 증가한 31%가 실시되고 있다. 2013년 3월 전국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 현황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2013년 3월 전국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 현황

시도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
	초			중			고			합계			
	전면	부분	계	전면	부분	계	전면	부분	계	전면	부분	계	
서울	555	0	555	0	379	379	0	0	0	555	379	934	72
부산	17	278	295	0	5	5	0	0	0	17	283	300	48.7
대구	55	0	55	16	0	16	1	0	1	72	0	72	16.6
인천	240	0	240	5	0	5	5	0	5	250	0	250	50.5
광주	149	0	140	88	0	88	0	0	0	237	0	237	78
대전	0	143	143	0	0	0	0	0	0	0	143	143	48.8
울산	52	27	79	6	0	6	0	0	0	58	27	85	36.6
세종	22	0	22	10	0	10	0	0	0	32	0	32	82.1
경기	1,188	0	1,188	454	147	601	6	0	6	1,648	147	1,795	80.3
강원	351	0	351	163	0	163	28	0	28	542	0	542	85.9
충북	259	0	259	127	0	127	0	0	0	386	0	386	82.3
충남	422	0	422	135	0	135	0	0	0	557	0	557	76.5
전북	420	0	420	208	0	208	54	0	54	682	0	682	89.7
전남	426	0	426	247	0	247	112	0	112	785	0	785	95
경북	402	13	415	206	0	206	3	0	3	611	13	624	65.3
경남	493	0	493	153	0	153	91	0	91	737	0	737	77.6
제주	110	0	110	44	0	44	0	0	0	154	0	154	83.7

※ 주: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 센터(2013. 3. 4.) 자료를 재구성함.

3. 제주지역 학교무상급식

제주지역에서는 1992년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농산 어촌 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였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의무교육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주지역 역시 교육감 및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서 단계적인 무상급식 확대를 통한 소외 없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향상 측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0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급식비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1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과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이 재정 부족으로 기존의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동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만 확대 지원하

여 오다가 2013학년도부터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교까지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가. 제주지역 학교 현황 및 재정 규모

1) 학교 현황

제주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 제주도내 학교수는 유치원 109개원, 초등학교 108개교, 중학교 43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3개교로 전체 293개교이며, 2012년도는 유치원 110개원, 초등학교 110개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국제학교가 2개교 늘어난 298개교이다

2011년 제주 교육통계의 학생수(원아수 포함)는 유치원 4,847명, 초등학교 42,143명, 중학교 24,556명, 고등학교 23,869명, 특수학교 468명으로 총 95,883명이었으나, 2012년도 학생수(원아수 포함)는 유치원 5,068명, 초등학교 40,172명, 중학교 24,059명, 고등학교 23,797명, 특수학교 455명으로 총 94,340명으로 2011년도에 비해 학교수는 늘어났지만, 학생수는 감소되었다. 제주지역 학교급별, 설립주체별 학교 및 학생수 현황은 <표 II-2>과 같다.

<표 II-2> 제주지역 학교급별, 설립주체별 학교 및 학생수 현황

(단위: 명)

학교급별	설립주체	2011년도		2012년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유치원	국·공립	86	2,048	88	1,999
	사립	23	2,799	22	3,069
초등학교	국·공립	108(8)	42,143	110(8)	40,172
중학교	국·공립	37	20,100	37	19,664
	사립	6	4,456	6	4,395
고등학교	국·공립	21	14,189	21	14,216
	사립	9	9,680	9	9,581
특수학교	국·공립	2	271	2	254
	사립	1	197	1	201
국제학교	국·공립	·	·	1	363
	사립	·	·	1	435
합계		293(8)	95,883	298(8)	94,340

※ 주: ()는 분교장수로 전체 학교수에 포함되지 않음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통계(2011, 2012).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규모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규모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5,841억3,300백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 1,168억2,100백만원, 자체수입 및 기타 256억500백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973억9,300백만원, 평생·직업교육으로 24억8,800백만원, 교육일반에 266억7,800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7,265억5,900백만원이다. 그러나, 2013년도에 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6,224억3,800백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 1,229억9,800백만원, 자체수입 및 기타 267억5,300백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7,460억3,800백만원, 평생·직업교육으로 28억1,200백만원, 교육일반에 233억2,100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7,721억 7,100백만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규모는 다음의 <표 II-3>와 같다.

<표 II-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		구분	세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2년	중앙정부이전수입	584,133	80.4	유아 및 초·중등 교육	697,393	96.0
	자치단체이전수입	116,821	16.1	평생·직업교육	2,488	0.3
	자체수입 및 기타	25,605	3.5	교육 일반	26,678	3.7
	계	726,559	100	계	726,559	100
2013년	중앙정부이전수입	622,438	80.6	유아 및 초·중등 교육	746,038	96.6
	자치단체이전수입	122,980	15.9	평생·직업교육	2,812	0.4
	자체수입 및 기타	26,753	3.5	교육 일반	23,321	3.0
	계	772,171	100	계	772,171	100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 2013년도 본예산 자료를 재구성함. (<http://www.jje.go.kr>).

나. 제주지역 학교무상급식

1) 학교급식 연혁

제주도 학교급식은 1974년 어도교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2000년에는 초·중·고 전체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급식을 시작하였다. 1992년에는 장애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으며, 2010년에는 농산어촌 초(병설유치원 포함)·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사립유치원 및 동지역 초등학교 학생까지 무상급식 지원이 확대되었다. 2012년 3월부터는 무상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유치원·초·중학교 읍면지역 및 동지역 중학교 3학년(동지역 1·2학년 제외)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받았으며, 2013학년도부터는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지역 학교급식의 주요 연혁은 다음의 <표 II-4>와 같다.

<표 II-4> 제주지역 학교급식 주요 연혁

년도	주요내용
1974	제주도내 최초 자체조리 학교급식 시작
1977	빵급식 식중독 사망 사건으로 빵 급식 전면 폐지
1981	학교급식법 제정, 학교급식 제도적 기틀 마련(학교급식의 목적, 방법, 시설·설비 경비부담, 전담직원 배치 등)
1992	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1995	초등학교 전면 급식 실시
2000	초·중·고·특수학교 전면 급식 실시
2010	농산어촌 초(병설유치원 포함)·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2011	사립유치원 및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2012	동지역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201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 자료: 탐라교육원(20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0) 및 2012~2013학년도 무상급식비 지원 계획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2) 학교무상급식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2학년도에 유치원·초등학교·읍면지역 중학교 학생·특수학교 267개교를 대상으로 56,616명 학생에게 246억5,104만6천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였다. 2013학년도에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268개교 67,740명에게 312억2,427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5>는 2012학년도 및 2013학년도 학교급별 무상급식 지원 현황이다.

<표 II-5> 제주지역 무상급식 현황

(단위: 교, 명, 천원)

구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학교수	학생수	연간 소요예산	1인1식당 평균단가	학교수	학생수	연간소요 예산	1인1식당 평균단가
유치원	88	2,111	935,513	2,628	89	2,220	1,031,865	2,761
	23	2,922	1,392,000	2,535	22	3,151	1,577,144	2,674
초등학교	110(8)	39,792	16,678,487	2,535	110	38,157	16,815,032	2,674
중학교	43	11,327	5,467,974	2,589	44	23,781	11,631,886	2,706
고등학교	-	-	-	-	-	-	-	-
특수학교	3	464	177,072	2,000	3	431	168,349	2,100
합계	267	56,616	24,651,046		268	67,740	31,224,276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2학년도 및 2013학년도 무상급식비 지원 계획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3) 제주지역 학교무상급식비 재원부담 현황

2012학년도 무상급식 재원부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156억 6,600백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인 도청에서 89억 8,500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246억5,1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13학년도 무상급식 재원부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155억 7,0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인 도청에서 155억 2,900백만원, 제주대학에서 1억2,600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312억2,500만원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원한 2012학년도 및 2013학년도 무상급식비 재원부담 현황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무상급식비 재원부담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교육청		도 청		제주대학		계	비고
	소요액	비율 (%)	소요액	비율 (%)	소요액	비율 (%)		
사립유치원	696	50	696	50			1,392	
읍면지역 병설유·초	4,214	100	0	0			4,214	
동지역 병설유·초	6,700	50	6,700	50			13,400	
2012 학년도	읍면지역 중학교	2,290	100	0	0		2,290	
동지역중 3학년	1,589	50	1,589	50			3,178	2012년 지원
특수학교	177	100	0	0			177	
합계	15,666	63.6	8,985	36.4			24,651	
2013 학년도	사립유치원	789	50	789	50		1,578	
공립유·초	8,806	50	8,807	50			17,613	
국립초	86	36.8	117	50	31	13.2	234	
공·사립중	5,604	50	5,604	50			11,208	
국립중	117	27.6	212	50	95	22.4	424	저소득 및 특수교육대상
특수학교	168	100		0			168	
합 계	15,570	49.9	15,529	49.7	126	0.4	31,225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2학년도 및 2013학년도 무상 급식비 지원 계획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4) 학교급별 1식당 지원 단가

2013년 3월 현재 학교급별 1식당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인 경우 도서지역 및 학교급별, 학생수 급간별에 따라 3,500원~2,09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교인 경우 학생수 급간별 3,000원~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특수학교는 학교 시설 및 관리를 위한 모든 영역의 관리비 및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 식품비만 2,1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지역 2013학년도 학교급별 및 학생수 급간별 1인 1식당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는 <표Ⅱ-7>과 같다.

<표Ⅱ-7> 학교급별 1인 1식당 지원 단가

(단위: 원)

구분	도서지역														
	비양분교, 마라분교	추자초, 가파초, 신양분교	우도초·중	100명~61명	초·중 통합, 60명 이하	101~130명	131~200명	221~330명	331~440명	441~600명	601~860명	861~1,170명	1,171~1,350명	1,351~1,800명	1,801명 이상
유·초	3,500	3,000	2,970	2,900	2,870	2,810	2,740	2,630	2,510	2,460	2,380	2,290	2,220	2,170	2,090

구분	읍면지역						동지역	비고
	추자중	우도초·중	초중통합	300명 이하	301~420명	421~660명		
중학교	3,000	2,970	2,870	2,840	2,720	2,650	2,600	급식비
특수학교	2,100원							식품비

※ 주: 2013학년도 무상 급식비 지원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 외국의 학교무상급식 지원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급식 형태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교급식이라 말하고 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스웨덴은 1845년 유치원급식을 시작으로 1937년 초·중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필란드는 1943년 무상급식법 제정과 1948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법 제정으로 유치원과 초·중

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운영 형태를 보면 반일제 학교와 전일제 학교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반일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요구도가 높지 않으며, 전일제 학교를 중심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주별로 학교급식 지원 비율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4개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에 차이가 있으며,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소득지원, 소득기반 구직자수당, 소득연계 고용·보조 수당, 「이민및망명법」 4부 해당자, 자녀세액공제, 국가연금 보장 요소 적용 대상자, 중 한가지 이상의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무상급식 지원 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 미국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보호자 부담 정도에 따라 무상, 할인, 유상 등으로 구분한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가계소득 및 가족수가 고려된 연방빈곤지표를 근거로 130% 미만인 가구이며, 연방빈곤지표 130%에서 185%미만 가구는 할인 급식을 제공하며 그 이상은 유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급식비 지원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요보호자’와 ‘준보호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의 무상급식은 지원 방법에 따라 전체 무상급식 실시 국가와 부분 무상급식 실시 국가로 나눌 수 있다. 전체 무상급식 실시 국가는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로 의무교육대상 모두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인 경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이후 고등학교와 직업학교 학생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분 무상급식 실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으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재학중인 유아(K학년)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은 연방빈곤지표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하고 있다. 영국은 지역별로 지원 대상자와 지원 요건이 차이가 있다. 독일은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I 단계에 해당하는 개방형 전일제 학교와 의무형 전일제 학교에 재학중인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에게 급식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5.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무상급식제도 도입과 실시에 따른 국민인식 및 학부모, 교직원 인식 조사를 통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강은희(2011)는 강원도 횡성지역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초등학교 근무하는 교직원이 중·고등학교 교직원보다 더 높게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로는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확대 방안으로는 학교급식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단계적 무상급식 예산확보와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 재정 조달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교육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중요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학교급식 운영은 ‘선별적 복지’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바뀌어 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무상급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편적 복지’ 실천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선희(2011)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연구에서 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업에 따른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은 미납자 해소와 학부모 부담 해소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공무원과 주부들은 지자체 정책 의지를 도입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회사원은 보편적 복지로의 변화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나아가 무상급식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전담 기구를 설치·운영 하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립급식경영지원기구(NFSMI)가 있고 일본은 일본체육진흥센터 및 도부현에 ‘학교급식회’ 등을 설치·운영하여 연구 및 기

술지원, 교육기능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무상급식 제도 운영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급식경영, 위생, 안전관리, 운영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무상급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양지선(2011)은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상급식 필요성에 있어서 학생의 82.8%, 학부모의 65.3%가 찬성하여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급식도 교육에 들어가므로,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의 급식은 무료여야 한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무상급식 혜택 범위는 고등학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8.6%로 가장 많았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고, 무상급식으로 인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학부모가 3.4%로 낮았으며 대부분이 반대하였다. 전체 무상급식의 질과 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국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학부모, 교육계,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협력하여 의견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대현(2010)은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공익적 성격과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력과 협력 체제가 필요하며,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지역에서 영양교사가 배치된 94개 초·중·고 급식학교의 교사와 학부모이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2년 12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제주지역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군집표집하여, 각 학교당 6부(교사 3부, 학부모 3부)씩 총 564부를 해당학교로 우편 발송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합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564부(교사 282부, 학부모 282부) 중에서 34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60.3%), 응답의 신뢰성이 부족한 11부(교사 2부, 학부모 9부)를 제외한 329부(교사 166부, 학부모 163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가. 교사

교사 응답자 166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교사의 연령은 40세~50세이하가 75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세~40세이하가 68명(34.9%), 50세이상인 33명(19.9%)으로 분포하였으며, 성별은 여자가 138명(83.1%)으로 많았고 남자는 28명(16.9%)으로 분포하였다. 학력은 대학교졸업이 110명(6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원졸업 46명(27.7%), 전문대학졸업 10명(6.0%)으로 분포하였다. 교사의 유형으로 일반교사는 123명(7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양교사 43명(25.9%)으로 분포하였다. 근무지는 제주지역이 86명(51.8%)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서귀포지역 80명(48.2%)으로 분포하였다.

교사의 근무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82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58명(34.9%), 고등학교 26명(15.7%)으로 분포하였다. 교사의 경력은 10년이상~20년미만이 55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이상~10년미만이 39

명(23.5%), 20년이상~30년미만이 36명(21.7%), 5년미만이 26명(15.7%), 그리고 30년이상인 10명(6.0%)으로 분포하였다. 자녀의 학교급은 고등학교이상이 94명(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가 50명(30.1%), 중학교 22명(13.3%) 순으로 분포하였다. 월소득은 350~500만원미만이 63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0만원이상이 55명(33.1%), 250~350만원미만이 30명(18.1%), 100~250만원미만이 16명(9.6%), 그리고 100만원미만 2명(1.2%) 순으로 분포하였다.

<표 III-1> 교사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N=166)

구분	빈도(명)	퍼센트(%)	
연령	20세~40세이하	58	34.9
	41세~50세이하	75	45.2
	50세이상	33	19.9
성별	남	28	16.9
	여	138	83.1
학력	전문대학졸업	10	6.0
	대학교졸업	110	66.3
	대학원졸업	46	27.7
교원의 유형	일반교사	123	74.1
	영양교사	43	25.9
근무지	제주시지역	86	51.8
	서귀포시지역	80	48.2
근무 학교급	초등학교	82	49.4
	중학교	58	34.9
	고등학교	26	15.7
교원의 경력	5년미만	26	15.7
	5년이상~10년미만	39	23.5
	10년이상~20년미만	55	33.1
	20년이상~30년미만	36	21.7
	30년이상	10	6.0
자녀의 학교급	초등학교	50	30.1
	중학교	22	13.3
	고등학교이상	94	56.6
	기타		
월소득	100만원미만	2	1.2
	100~250만원미만	16	9.6
	250~350만원미만	30	18.1
	350~500만원미만	63	38.0
	500만원이상	55	33.1

나. 학부모

학부모 응답자 163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2>과 같다. 학부모의 연령은 40세~50세이하가 99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세~40세이하가 48명(29.5%), 50세이상 16명(9.8%)으로 분포하였으며, 성별은 여자가 143명(87.7%)으로 많았고, 남자는 20명(12.3%)으로 분포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76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졸업 54명(33.1%), 전문대학졸업 23명(14.1%), 중학교졸업이 6명(3.7%), 그리고 대학원졸업이 4명(2.5%) 순으로 분포하였다. 거주지는 제주지역이 85명(52.1%)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서귀포지역 78명(47.9%)으로 분포하였다.

학부모의 자녀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81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54명(33.1%), 고등학교이상 28명(17.2%)으로 분포하였다. 월소득은 350~500만원미만이 50명(30.70%)으로 가장 많았다. 자세한 구성은 <표 III-2>과 같다.

<표 III-2> 학부모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N=163)

	구분	빈도(명)	퍼센트(%)
연령	20세~40세이하	48	29.5
	41세~50세이하	99	60.7
	50세이상	16	9.8
성별	남	20	12.3
	여	143	87.7
학력	중학교 졸업	6	3.7
	고등학교졸업	76	46.6
	전문대학졸업	23	14.1
	대학교졸업	54	33.1
	대학원졸업	4	2.5
거주지	제주지역	85	52.1
	서귀포지역	78	47.9
자녀의 학교급	초등학교	81	49.7
	중학교	54	33.1
	고등학교이상	28	17.2
월소득	100만원미만	10	6.2
	100~250만원미만	42	25.7
	250~350만원미만	49	30.0
	350~500만원미만	50	30.7
	500만원이상	12	7.4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강은희, 2011; 김지영, 2012; 박대현, 2010; 이선희, 2011)를 참고하여 지도교수와 동료 영양교사들의 조언을 받아 개발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영양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중복성과 난해한 문항에 대해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설문지 영역별 문항 구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문항수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무상급식 제도의 필요성 - 전면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 -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 	9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무상급식 재원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 - 재정부담 주체 - 재정부담 적정 비율 - 학교무상급식 정착에 고려할 측면 	10
학교무상급식의 문제점 인식에 따른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우려되는 점 - 세금증가 범위 - 세금증가시 찬성 여부 - 세금증가시 찬성하는 이유 - 세금증가시 반대하는 이유 	5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급식 및 학교무상급식의 필요성과 학교급식비 부담 및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에 대한 문항 분석에 대해서는 χ^2 검증과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제주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하여 2012학년도 영양교사 배치교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설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인식

가.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성

1) 교사의 인식

교사의 ‘전면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성(교사)

N=166,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χ^2 p
교사 유형	일반교사	6(85.3)	13(81.3)	30(81.1)	40(70.2)	34(69.4)	123(74.1)	2.882 .578
	영양교사	1(14.3)	3(18.8)	7(18.9)	17(29.8)	15(30.6)	43(25.9)	
	전체	7(100)	16(100)	37(100)	57(100)	49(100)	166(100)	
근 무 지	제주시	2(28.6)	5(31.3)	22(59.5)	34(59.6)	23(46.9)	86(51.8)	6.959 .138
	서귀포시	5(71.4)	11(68.8)	15(40.5)	23(40.4)	26(53.1)	80(48.2)	
	전체	7(100)	16(100)	37(100)	57(100)	49(100)	166(100)	
학 교 급	초	6(85.7)	8(50.0)	17(45.9)	27(47.4)	24(49.0)	82(49.4)	4.965 .761
	중	1(14.3)	6(37.5)	15(40.5)	20(35.1)	16(32.7)	58(34.9)	
	고	0(0)	2(12.5)	5(13.5)	10(17.5)	9(18.4)	26(15.7)	
	전체	7(100)	16(100)	37(100)	57(100)	49(100)	166(100)	
경력	5년미만	1(14.3)	2(12.5)	6(16.2)	7(12.3)	10(20.4)	26(15.7)	44.144

5년이상~10년미만	0(0)	1(6.3)	8(21.6)	17(29.8)	13(26.5)	39(23.5)	.000***
10년이상~20년미만	1(14.3)	7(43.8)	11(29.7)	21(36.8)	15(30.6)	55(33.1)	
20년이상~30년미만	1(14.3)	4(25.0)	10(27.0)	10(17.5)	11(22.4)	36(21.7)	
30년이상	4(57.1)	2(12.5)	2(5.4)	2(3.5)	0(0)	10(6.0)	
전체	7(100)	16(100)	37(100)	57(100)	49(100)	166(100)	

***p < .001

교사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성’에 대하여 배경변인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경력에서만 $\chi^2=44.144$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체적으로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도입이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57명)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49명)로 전체 응답자 166명 중 106명이 전면 학교무상급식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가 경력 ‘10년이상~20년미만’(21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5년이상~10년미만’(17명), ‘20년이상~30년미만’(10명), ‘5년미만’(7명), 그리고 ‘30년이상’(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매우 필요하다’가 경력 ‘10년이상~20년미만’(15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5년이상~10년미만’(13명), ‘20년이상~30년미만’(11명), 그리고 ‘5년미만’(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의 ‘전면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2>과 같다.

<표 IV-2>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성(학부모)

N=163, (단위: 명, %)

	구분	전혀필요 하지않다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이하	0(0)	5(27.8)	1(5.3)	17(31.5)	25(36.2)	48(29.4)	14.137 .078
	41세~50세이하	2(66.7)	9(50)	15(78.9)	34(63.0)	39(56.5)	99(60.7)	
	50세이상	1(33.3)	4(22.2)	3(15.8)	3(5.6)	5(7.2)	16(9.8)	
	전체	3(100)	18(100)	19(100)	54(100)	69(100)	163(100)	
거주지	제주시	1(33.3)	9(50.0)	9(47.4)	21(38.9)	32(46.4)	72(44.2)	1.217 .875
	서귀포시	2(66.7)	9(50.0)	10(52.6)	33(61.1)	37(53.6)	91(55.8)	
	전체	3(100)	18(100)	19(100)	54(100)	69(100)	163(100)	
학교급	초	1(33.3)	6(33.3)	6(31.6)	29(53.7)	39(56.5)	81(49.7)	13.811 .087
	중	1(33.3)	5(27.8)	11(57.9)	16(29.6)	2(30.4)	54(33.1)	
	고	1(33.3)	7(38.9)	2(10.5)	9(16.7)	9(13.0)	28(17.2)	
	전체	3(100)	18(100)	19(100)	54(100)	69(100)	163(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0(0)	1(5.6)	2(10.5)	4(7.4)	3(4.3)	10(6.1)	11.117 .802
	100~250 만원미만	1(33.3)	3(16.7)	4(21.1)	16(29.6)	18(26.1)	42(25.8)	
	250~350 만원미만	1(33.3)	6(33.3)	5(26.3)	17(31.5)	20(29.0)	49(30.1)	
	350~500만 원미만	1(33.3)	5(27.8)	7(36.8)	17(31.5)	20(29.0)	50(30.7)	
	500만원이상	0(0)	3(16.7)	1(5.3)	0(0)	8(11.6)	12(7.4)	
	전체	3(100)	18(100)	19(100)	54(100)	69(100)	163(100)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성’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연령, 거주지, 학교급, 월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의 ‘전면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3>과 같다.

<표 IV-3>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성

구분	N	M	SD	t	p
교사	166	3.96	1.014	-2.086	.038*
학부모	163	4.19	.953		

* p < .05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무상학교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t=-2.307$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사(M=3.75)보다 학부모(M=4.03)가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학교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높게 응답하였다.

나.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1) 교사의 인식

교사의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교사)

N=108,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χ^2 p
교사 유형	일반교사	27(64.3)	15(68.2)	9(69.2)	25(80.6)	76(70.4)	2.374
	영양교사	15(35.7)	7(31.8)	4(30.8)	6(19.4)	32(29.6)	.498
	전체	42(100)	22(100)	13(100)	31(100)	108(100)	
근 무 지	제주시	29(69.0)	6(27.3)	7(53.8)	15(48.4)	57(52.8)	10.449
	서귀포시	13(31.0)	16(72.7)	6(46.2)	16(51.6)	51(47.2)	.015*
	전체	42(100)	22(100)	13(100)	31(100)	108(100)	
학 교 급	초	26(61.9)	8(36.4)	3(23.1)	14(45.2)	51(47.2)	15.379 .018*
	중	10(23.8)	13(59.1)	5(38.5)	10(32.3)	38(35.2)	
	고	6(14.3)	1(4.5)	5(38.5)	7(22.6)	19(17.6)	
	전체	42(100)	22(100)	13(100)	31(100)	108(100)	
경력	5년미만	5(11.9)	2(9.1)	2(15.4)	8(25.8)	17(15.7)	9.428 .666
	5년이상~10년미만	12(28.6)	4(18.2)	4(30.8)	10(32.3)	30(27.8)	
	10년이상~20년미만	17(40.5)	8(36.4)	5(38.5)	7(22.6)	37(34.3)	
	20년이상~30년미만	7(16.7)	7(31.8)	2(15.4)	6(19.4)	22(20.4)	
	30년이상	1(2.4)	1(4.5)	0(0)	0(0)	2(1.9)	
전체	42(100)	22(100)	13(100)	31(100)	108(100)		

* $p < .05$

※ 주: ①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 ②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 ③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 격차 나타나지 않기 때문, ④ 국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

교사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배경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근무지와 학교급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근무지에 따른 교사들이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10.449$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제주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29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15명),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7명) 그리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귀포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16명)과 ‘국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16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13명), 그리고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교사들이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15.378$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26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14명),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8명) 그리고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13명)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10명)과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10명), 그리고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국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10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6명),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5명), 그리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의 ‘전면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5>와 같다.

<표 IV-5>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학부모)

N=126,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이하	14(35.9)	11(28.2)	8(36.4)	9(34.6)	42(33.3)	10.484 .106
	41세~50세이하	22(56.4)	27(69.2)	9(40.9)	16(61.5)	74(58.7)	
	50세이상	3(7.7)	1(2.6)	5(22.7)	1(3.8)	1(7.9)	
전체	39(100)	39(100)	22(100)	26(100)	126(100)		
거주지	제주시	24(61.5)	13(33.3)	12(54.5)	6(23.1)	55(43.7)	12.297 .006**
	서귀포시	15(38.5)	26(66.7)	10(45.5)	20(76.9)	71(56.3)	
	전체	39(100)	39(100)	22(100)	26(100)	126(100)	
학교급	초	21(53.8)	24(61.5)	14(63.6)	10(38.5)	69(54.8)	11.192 .083
	중	11(28.2)	10(25.6)	3(13.6)	14(53.8)	38(30.2)	
	고	7(17.9)	5(12.8)	5(22.7)	2(7.7)	19(15.1)	
	전체	39(100)	39(100)	22(100)	26(100)	126(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4(10.3)	3(7.7)	1(4.5)	0(0)	8(6.3)	14.146 .291
	100~250만원미만	8(20.5)	15(38.5)	6(27.3)	6(23.1)	35(27.8)	
	250~350만원미만	12(30.8)	9(23.1)	9(40.9)	7(26.9)	37(29.4)	
	350~500만원미만	10(25.6)	12(30.8)	5(22.7)	11(42.3)	38(30.2)	
	500만원이상	5(12.8)	0(0)	1(4.5)	2(7.7)	8(6.3)	
전체	39(100)	39(100)	22(100)	26(100)	126(100)		

**p < .01

※ 주: ①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 ②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 ③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 격차 나타나지 않기 때문, ④ 국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거주지에서만 $\chi^2=12.297$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제주시지역의 학부모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24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13명),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12명), 그리고 ‘국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

문’(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귀포시지역 학부모는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26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20명),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15명), 그리고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chi^2(df)$	p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42(51.9)	39(48.1)	81(100)	6.254(3)	.100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22(36.1)	39(63.9)	61(100)		
무상학교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	13(37.1)	22(62.9)	35(100)		
국가의 교육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	31(54.4)	26(45.6)	57(100)		
기 타	0(0)	0(0)	0(0)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6.254(3)$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81명)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61명), ‘국가의 교육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57명), 그리고 ‘무상학교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3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

1) 교사의 인식

교사의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7>과 같다.

<표 IV-7>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교사)

N=166,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p
교사 유형	일반교사	6(75.0)	36(81.8)	16(66.7)	30(75.0)	11(78.6)	24(66.7)	123(74.1)	3.259 .660
	영양교사	2(25.0)	8(18.2)	8(33.3)	10(25.0)	3(21.4)	12(33.3)	43(25.9)	
전체		8(100)	44(100)	24(100)	40(100)	14(100)	36(100)	166(100)	
근무지	제주시	2(25.0)	26(59.1)	16(66.7)	25(62.5)	5(35.7)	12(33.3)	86(51.8)	13.565 .019*
	서귀포시	6(75.0)	18(40.9)	8(33.3)	15(37.5)	9(64.3)	24(66.7)	80(48.2)	
	전체	8(100)	44(100)	24(100)	40(100)	14(100)	36(100)	166(100)	
학교급	초	7(87.5)	23(52.3)	14(58.3)	22(55.0)	4(28.6)	12(33.3)	82(49.4)	20.526 .025*
	중	0(0)	18(40.9)	9(37.5)	11(27.5)	5(35.7)	15(41.7)	58(34.9)	
	고	1(12.5)	3(6.8)	1(4.2)	7(17.5)	5(35.7)	9(25.0)	26(15.7)	
	전체	8(100)	44(100)	24(100)	40(100)	14(100)	36(100)	166(100)	
경력	5년미만	2(25.0)	3(6.8)	7(29.2)	5(12.5)	2(14.3)	7(19.4)	26(15.7)	27.691 .117
	5년이상~10년미만	0(0)	10(22.7)	6(25.0)	9(22.5)	2(14.3)	12(33.3)	39(23.5)	
	10년이상~20년미만	2(25.0)	14(31.8)	8(33.3)	16(40.0)	6(42.9)	9(25.0)	55(33.1)	
	20년이상~30년미만	2(25.0)	11(25.0)	2(8.3)	10(25.0)	4(28.6)	7(19.4)	36(21.7)	
	30년이상	2(25.0)	6(13.6)	1(4.2)	0(0)	0(0)	1(2.8)	10(6.0)	
	전체	8(100)	44(100)	24(100)	40(100)	14(100)	36(100)	166(100)	

*P < .01

※ 주: ① 초등학교, ② 유치원+초등학교, ③ 초등학교+중학교, ④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⑥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근무지와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전체 교사들은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44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40명),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36명), ‘초등학교+중학교’(24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14명), 그리고 ‘초등학교’(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근무지에 따른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13.565$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제주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치원+초등학교’(26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25명), ‘초등학교+중학교’(16명),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12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5명) 그리고 ‘초등학교’(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귀포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24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유치원+초등학교’(18명),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15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9명), ‘초등학교+중학교’(8명), 그리고 ‘초등학교’(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20.526$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23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22명), ‘초등학교+중학교’(14명),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12명), ‘초등학교’(7명),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치원+초등학교’(18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15명),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11명), ‘초등학교+중학교’(9명),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9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7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5명), ‘유치원+초등학교’(3명), 그리고 ‘초등학교’(1명)와 ‘초등학교+중학교’(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치원+초등학교’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의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8>과 같다.

<표 IV-8>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학부모)

N=163,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이하	0(0)	5(20.0)	8(34.8)	13(36.1)	5(20.0)	17(35.4)	48(29.4)	16.479 .087
	41세~50세이하	5(83.3)	14(56.0)	14(60.9)	23(63.9)	18(72.0)	25(52.1)	99(60.7)	
	50세이상	1(16.7)	6(24.0)	1(4.3)	0(0)	2(8.0)	6(12.5)	16(9.8)	
	전체	6(100)	25(100)	23(100)	36(100)	25(100)	48(100)	163(100)	
거주지	제주시	3(50.0)	12(48.0)	13(56.5)	18(50.0)	9(36.0)	17(35.4)	72(44.2)	4.319 .505
	서귀포시	3(50.0)	13(52.0)	10(43.5)	18(50.0)	16(64.0)	31(64.6)	91(55.8)	
	전체	6(100)	25(100)	23(100)	36(100)	25(100)	48(100)	163(100)	
학교급	초	2(33.3)	8(32.0)	14(60.9)	24(66.7)	9(36.0)	24(50.0)	81(49.7)	14.333 .158
	중	3(50.0)	10(40.0)	5(21.7)	7(19.4)	13(52.0)	16(33.3)	54(33.1)	
	고	1(16.7)	7(28.0)	4(17.4)	5(13.9)	3(12.0)	8(16.7)	28(17.2)	
	전체	6(100)	25(100)	23(100)	36(100)	25(100)	48(100)	163(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0(0)	0(0)	0(0)	2(5.6)	5(20.0)	3(6.3)	10(6.1)	21.675 .358
	100~250만원미만	1(16.7)	5(20.0)	9(39.1)	8(22.2)	6(24.0)	13(27.1)	42(25.8)	
	250~350만원미만	2(33.3)	9(36.0)	4(17.4)	10(27.8)	10(40.0)	14(29.2)	49(30.1)	
	350~500만원미만	2(33.3)	8(32.0)	8(34.8)	13(36.1)	4(16.0)	15(31.3)	50(30.7)	
	500만원이상	1(16.7)	3(12.0)	2(8.7)	3(8.3)	0(0)	3(6.3)	12(7.4)	
전체	6(100)	25(100)	23(100)	36(100)	25(100)	48(100)	163(100)		

* 주: ① 초등학교, ② 유치원+초등학교, ③ 초등학교+중학교, ④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⑥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연령, 거주지, 학교급, 월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48명)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36명), ‘유치원+초등학교’(25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25명), ‘초등학교+중학교’(23명), 그리고 ‘초등학교’(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9>과 같다.

<표 IV-9>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교사)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chi^2(df)$	p
초등학교	8(57.1)	6(42.9)	14(100)	10.540(5)	.061
유치원+초등학교	44(63.8)	25(36.2)	69(100)		
초등학교+중학교	24(51.1)	23(48.9)	47(100)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40(52.6)	36(47.4)	76(10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4(35.9)	25(64.1)	39(100)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36(42.9)	48(57.1)	84(100)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대상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10.540(5)$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84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76명), ‘유치원+초등학교’(69명), ‘초등학교+중학교’(47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39명), 그리고 ‘초등학교’(1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2.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무상급식 재원에 대한 인식

가.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

1) 교사의 인식

교사의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0>과 같다.

<표 IV-10>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교사)

N=166,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p
교사 유형	일반교사	27(67.5)	42(72.4)	29(80.6)	24(80.0)	1(50.0)	123(74.1)	2.925 .571
	영양교사	13(32.5)	16(27.6)	7(19.4)	6(20.0)	1(50.0)	43(25.9)	
	전체	40(100)	58(100)	36(100)	30(100)	2(100)	166(100)	
근 무 지	제주시	19(47.5)	35(60.3)	22(61.1)	10(33.3)	0(0)	86(51.8)	9.489 .050*
	서귀포시	21(52.5)	23(39.7)	14(38.9)	20(66.7)	2(100)	80(48.2)	
	전체	40(100)	58(100)	36(100)	30(100)	2(100)	166(100)	
학 교 급	초	23(57.5)	30(51.7)	17(47.2)	10(33.3)	2(100)	82(49.4)	8.270 .408
	중	10(25.0)	20(34.5)	15(41.7)	13(43.3)	0(0)	58(34.9)	
	고	7(17.5)	8(13.8)	4(11.1)	7(23.3)	0(0)	26(15.7)	
	전체	40(100)	58(100)	36(100)	30(100)	2(100)	166(100)	
경 력	5년미만	5(12.5)	7(12.1)	10(27.8)	4(13.3)	0(0)	26(15.7)	12.940 .677
	5년이상~10년미만	11(27.5)	13(22.4)	7(19.4)	7(23.3)	1(50.0)	39(23.5)	
	10년이상~20년미만	13(32.5)	17(29.3)	14(38.9)	10(33.3)	1(50.0)	55(33.1)	
	20년이상~30년미만	8(20.0)	18(31.0)	4(11.1)	6(20.0)	0(0)	36(21.7)	
	30년이상	3(7.5)	3(5.2)	1(2.8)	3(10.0)	0(0)	10(6.0)	
	전체	40(100)	58(100)	36(100)	30(100)	2(100)	166(100)	

*p < .05

※ 주: ① 학교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 ②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 ③ 기존 선별적 급식비지원 학생들의 느꼈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 ④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 ⑤ 기타

교사들이 인식하는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근무지에서만 $\chi^2=9.489$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제주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35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존 급식비 지원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22명), ‘학교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19명), 그리고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귀포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23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학교 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21명),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20명), 그리고 '기존 선별적 급식비 지원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1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제주지역과 서귀포지역 모두에서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59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학교 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기 때문'(40명), '기존 선별적 급식비지원에서 학생들이 느꼈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36명), 그리고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20명)으로 응답하였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의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1>과 같다.

<표 IV-11>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학부모)

N=163,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이하	13(24.1)	12(27.9)	18(41.9)	5(23.8)	0(0)	48(29.4)	10.727 .218
	41세~50세이하	37(68.5)	27(62.8)	22(51.2)	12(57.1)	1(50.0)	99(60.7)	
	50세이상	4(7.4)	4(9.3)	3(7.0)	4(19.0)	1(50.0)	16(9.8)	
	전체	54(100)	43(100)	43(100)	21(100)	2(100)	163(100)	
거주지	제주시	24(44.4)	15(34.9)	22(51.2)	11(52.4)	0(0)	72(44.2)	4.514 .341
	서귀포시	30(55.6)	28(65.1)	21(48.8)	10(47.6)	2(100)	91(55.8)	
	전체	54(100)	43(100)	43(100)	21(100)	2(100)	163(100)	
학교급	초	29(53.7)	17(39.5)	29(67.4)	6(28.6)	0(0)	81(49.7)	20.873 .007**
	중	21(38.9)	17(39.5)	8(18.6)	7(33.3)	1(50.0)	54(33.1)	
	고	4(7.4)	9(20.9)	6(14.0)	8(38.1)	1(50.)	28(17.2)	
	전체	54(100)	43(100)	43(100)	21(100)	2(100)	163(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2(3.7)	3(7.0)	3(7.0)	2(9.5)	0(0)	10(6.1)	17.483 .355
	100~250만원미만	15(27.8)	15(34.9)	9(20.9)	2(9.5)	1(50.0)	42(25.8)	
	250~350만원미만	15(27.8)	12(27.9)	13(30.2)	9(42.9)	0(0)	49(30.1)	
	350~500만원미만	18(33.3)	9(20.9)	17(39.5)	6(28.6)	0(0)	50(30.7)	
	500만원이상	4(7.4)	4(9.3)	1(2.3)	2(9.5)	1(50.0)	12(7.4)	
전체	54(100)	43(100)	43(100)	21(100)	2(100)	163(100)		

**p < .01

※ 주: ① 학교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 ②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 ③ 기존 선별적 급식비지원 학생들의 느꼈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
④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 ⑤ 기타

학부모가 인식하는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학교급에서만 $\chi^2=20.873$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급식은 국가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29)과 ‘기존 선별적 급식비 지원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29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17명), 그리고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학부모는 ‘학교급식은 국가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21)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17명), ‘기존 선별적 급식비 지원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8명), 그리고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학부모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9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8명), ‘기존 선별적 급식비지원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4명), 그리고 ‘학교급식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학부모는 ‘학교급식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54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서’(43명)와 ‘기존 선별적 급식비지원 학생들이 느꼈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어서’(43명), 그리고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2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2>와 같다.

<표 IV-12>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chi^2(df)$	p
학교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	40(42.6)	54(57.4)	94(100)	6.495(4)	.165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	58(57.4)	43(42.6)	101(100)		
기존 선별적 급식비지원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	36(45.6)	42(54.4)	79(100)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	30(58.8)	21(41.2)	51(100)		
기타	2(50.0)	2(50.0)	4(100)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6.495(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101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의 순으로 ‘학교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94명), ‘기존 선별적 급식에서 학생들의 느꼈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79명), 그리고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51명) 이라고 응답하였다.

나.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

1) 교사의 인식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3>와 같다.

<표 IV-13>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교사)

N=166,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p
교사 유형	일반교사	34(81.0)	85(71.4)	2(100)	1(50.0)	1(100)	123(74.1)	3.124 .537
	영양교사	8(19.0)	34(28.6)	0(0)	1(50.0)	0(0)	43(25.9)	
	전체	42(100)	119(100)	2(100)	2(100)	1(100)	166(100)	
근무지	제주시	18(42.9)	66(55.5)	1(50.0)	0(0)	1(100)	86(51.8)	5.067 .280
	서귀포시	24(57.1)	53(44.5)	1(50.0)	2(100)	0(0)	80(48.2)	
	전체	42(100)	119(100)	2(100)	2(100)	1(100)	166(100)	
학교급	초	20(47.6)	58(48.7)	2(100)	1(50.0)	1(100)	82(49.4)	5.420 .712
	중	15(35.7)	43(36.1)	0(0)	0(0)	0(0)	58(34.9)	
	고	7(16.7)	18(15.1)	0(0)	1(50.0)	0(0)	26(15.7)	
	전체	42(100)	119(100)	2(100)	2(100)	1(100)	166(100)	
경력	5년미만	10(23.8)	15(12.6)	1(50.0)	0(0)	0(0)	26(15.7)	24.792 .074
	5년이상~10년미만	10(23.8)	29(24.4)	0(0)	0(0)	0(0)	39(23.5)	
	10년이상~20년미만	11(26.2)	43(36.1)	0(0)	1(50.0)	0(0)	55(33.1)	
	20년이상~30년미만	8(19.0)	26(21.8)	1(50.0)	1(50.0)	0(0)	36(21.7)	
	30년이상	3(7.1)	6(5.0)	0(0)	0(0)	1(100)	10(6.0)	
	전체	42(100)	119(100)	2(100)	2(100)	1(100)	166(100)	

※ 주: ① 국가(교육과학기술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③ 지방자치단체, ④ 자치단체와 교육청
⑤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교원유형, 근무지, 학교급, 경력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119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교육과학기술부)’(42명), ‘지방자치단체’(2명), ‘자치단체와 교육청’(2명), 그리고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3>와 같다.

<표 IV-14>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학부모)

N=163,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이하	11(32.4)	33(28.2)	1(50.0)	2(25.0)	1(50.0)	48(29.4)	3.550 .895
	41세~50세이하	18(52.9)	73(62.4)	1(50.0)	6(75.0)	1(50.0)	99(60.7)	
	50세이상	5(14.7)	11(9.4)	0(0)	0(0)	0(0)	16(9.8)	
	전체	34(100)	117(100)	2(100)	8(100)	2(100)	163(100)	
거주지	제주시	12(35.3)	53(45.3)	1(50.0)	5(62.5)	1(50.0)	72(44.2)	2.292 .682
	서귀포시	22(64.7)	64(54.7)	1(50.0)	3(37.5)	1(50.0)	91(55.8)	
	전체	34(100)	117(100)	2(100)	8(100)	2(100)	163(100)	
학교급	초	20(58.8)	55(47.0)	1(50.0)	4(50.0)	1(50.0)	81(49.7)	3.437 .904
	중	8(23.5)	42(35.9)	1(50.0)	2(25.0)	1(50.0)	54(33.1)	
	고	6(17.6)	20(17.1)	0(0)	2(25.0)	1(0)	28(17.2)	
	전체	34(100)	117(100)	2(100)	8(100)	2(100)	163(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1(2.9)	7(6.0)	0(0)	2(25.0)	0(0)	10(6.1)	15.698 .474
	100~250만원	11(32.4)	28(23.9)	1(50.0)	2(25.0)	0(0)	42(25.8)	
	250~350만원미만	11(32.4)	36(30.8)	1(50.0)	1(12.5)	0(0)	49(30.1)	
	350~500만원미만	9(26.5)	38(32.5)	0(0)	2(25.0)	1(50.0)	50(30.7)	
	500만원이상	2(5.9)	8(6.8)	0(0)	1(12.5)	1(50.0)	12(7.4)	
전체	34(100)	117(100)	2(100)	8(100)	2(100)	163(100)		

※ 주: ① 국가(교육과학기술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③ 지방자치단체, ④ 자치단체와 교육청
⑤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연령, 거주지, 학교급, 월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학부모는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117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교육과학기술부)’(34명),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8명), 그리고 ‘자치단체’(2명)와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5>과 같다.

<표 IV-15>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chi^2(df)$	p
국가(교육과학기술부)	42(55.3)	34(44.7)	76(10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19(50.4)	117(49.6)	236(100)		
지방자치단체	2(50.0)	2(50.0)	4(100)	4.765(4)	.312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2(20.0)	8(80.0)	10(100)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	1(33.3)	2(66.7)	3(100)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4.765(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236명). 다음 순으로 ‘국가(교육과학기술부)’(76명),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10명), ‘지방자치단체’(4명) 그리고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3명)서라고 응답하였다.

다.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걱정 비율

1) 교사의 인식

교사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걱정 비율’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6>과 같다.

<표 IV-16>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 비율(교사)

N=166,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X ² p	
국가	교사유형	일반교사	7(100)	10(66.7)	15(83.3)	22(66.7)	69(74.2)	123(74.1)	4.628 .328
		영양교사	0(0)	5(33.3)	3(16.7)	11(33.3)	24(25.8)	43(25.9)	
		전체	7(100)	15(100)	18(100)	33(100)	93(100)	166(100)	
	근무지	제주시	5(71.4)	10(66.7)	9(50.0)	19(57.6)	43(46.2)	86(51.8)	4.025 .403
		서귀포시	2(28.6)	5(33.3)	9(50.0)	14(42.4)	50(53.8)	80(48.2)	
		전체	7(100)	15(100)	18(100)	33(100)	93(100)	166(100)	
	학교급	초	3(42.9)	7(46.7)	12(66.7)	18(54.5)	42(45.2)	82(49.4)	6.944 .543
		중	2(28.6)	7(46.7)	3(16.7)	9(27.3)	37(39.8)	58(34.9)	
		고	2(28.6)	1(6.7)	3(16.7)	6(18.2)	14(15.1)	26(15.7)	
	경력	전체	7(100)	15(100)	18(100)	33(100)	93(100)	166(100)	14.755 .543
		5년미만	3(42.9)	1(6.7)	3(16.7)	6(18.2)	13(14.0)	26(15.7)	
		5년이상~10년미만	1(14.3)	3(20.0)	3(16.7)	10(30.3)	22(23.7)	39(23.5)	
		10년이상~20년미만	3(42.9)	6(40.0)	9(50.0)	11(33.3)	26(28.0)	55(33.1)	
		20년이상~30년미만	0(0)	4(26.7)	3(16.7)	5(15.2)	24(25.8)	36(21.7)	
		30년이상	0(0)	1(6.7)	0(0)	1(3.0)	8(8.6)	10(6.0)	
전체		7(100)	15(100)	18(100)	33(100)	93(100)	166(100)		
지방자치단체	교사유형	일반교사	10(71.4)	29(78.4)	36(70.6)	25(75.8)	23(74.2)	123(74.1)	.780 .941
		영양교사	4(28.6)	8(21.6)	15(29.4)	8(24.2)	8(25.8)	43(25.9)	
		전체	14(100)	37(100)	51(100)	33(100)	31(100)	163(100)	
	근무지	제주시	9(64.3)	20(54.1)	28(54.9)	17(51.5)	12(38.7)	86(51.8)	3.275 .513
		서귀포시	5(35.7)	17(45.9)	23(45.1)	16(48.5)	19(61.3)	80(48.2)	
		전체	14(100)	37(100)	51(100)	33(100)	31(100)	163(100)	
	학교급	초	5(35.7)	19(51.4)	25(49.0)	19(57.6)	14(45.2)	82(49.4)	5.122 .745
		중	5(35.7)	13(35.1)	17(33.3)	12(36.4)	11(35.5)	58(34.9)	
		고	4(28.6)	5(13.5)	9(17.6)	2(6.1)	6(19.4)	26(15.7)	
	경력	전체	14(100)	37(100)	51(100)	33(100)	31(100)	163(100)	15.060 .520
		5년미만	3(21.4)	5(13.5)	9(17.6)	7(21.2)	2(6.5)	26(15.7)	
		5년이상~10년미만	4(28.6)	7(18.9)	13(25.5)	9(27.3)	6(19.4)	39(23.5)	
		10년이상~20년미만	3(21.4)	17(45.9)	16(31.4)	8(24.2)	11(35.5)	55(33.1)	
		20년이상~30년미만	3(21.4)	8(21.6)	11(21.6)	7(21.2)	7(22.6)	36(21.7)	
		30년이상	1(7.1)	0(0)	2(3.9)	2(6.1)	5(16.1)	10(6.0)	
전체		14(100)	37(100)	51(100)	33(100)	31(100)	163(100)		
시·도교육청	교사유형	일반교사	66(69.5)	35(76.1)	17(85.0)	2(100)	3(100)	123(74.1)	4.139 .387
		영양교사	29(30.5)	11(23.9)	3(15.0)	0(0)	0(0)	43(25.9)	
		전체	95(100)	46(100)	20(100)	2(100)	3(100)	166(100)	
	근무지	제주시	51(53.7)	20(43.5)	13(65.0)	0(0)	2(66.7)	86(51.8)	5.222 .265
		서귀포시	44(46.3)	26(56.5)	7(35.0)	2(100)	1(33.3)	80(48.2)	
		전체	95(100)	46(100)	20(100)	2(100)	3(100)	166(100)	
	학교	초	43(45.3)	27(58.7)	10(50.0)	1(50.0)	1(33.3)	82(49.4)	4.778 .781
		중	38(40.0)	11(23.9)	7(35.0)	1(50.0)	1(33.3)	58(34.9)	

사회적기금조성	급	고	14(14.7)	8(17.4)	3(15.0)	0(0)	1(33.3)	26(15.7)	16.892 .393	
		전체	95(100)	46(100)	20(100)	2(100)	3(100)	166(100)		
	경력	5년미만	11(11.6)	6(13.0)	7(35.0)	0(0)	2(66.7)	26(15.7)		
		5년이상~10년미만	21(22.1)	13(28.3)	4(20.0)	1(50.0)	0(0)	39(23.5)		
		10년이상~20년미만	33(34.7)	14(30.4)	6(30.0)	1(50.0)	1(33.3)	55(33.1)		
		20년이상~30년미만	24(25.3)	10(21.7)	2(10.0)	0(0)	0(0)	36(21.7)		
		30년이상	6(6.3)	3(6.5)	1(5.0)	0(0)	0(0)	10(6.0)		
		전체	95(100)	46(100)	20(100)	2(100)	3(100)	166(100)		
	교사유형	일반교사	46(74.2)	20(80.0)	7(87.5)	3(60.0)	2(100)	78(76.5)		2.262 .688
		영양교사	16(25.8)	5(20.0)	1(12.5)	2(40.0)	0(0)	24(23.5)		
	근무지	전체	62(100)	25(100)	8(100)	5(100)	2(100)	102(100)		2.668 .615
		제주시	28(45.2)	12(48.0)	6(75.0)	2(40.0)	1(50.0)	49(48.0)		
		서귀포시	34(54.8)	13(52.0)	2(25.0)	3(60.0)	1(50.0)	53(52.0)		
	학교급	전체	62(100)	25(100)	8(100)	5(100)	2(100)	102(100)		13.870 .085
		초	33(53.2)	12(48.0)	2(25.0)	1(20.0)	1(50.0)	49(48.0)		
		중	19(30.6)	11(44.0)	5(62.5)	1(20.0)	0(0)	36(35.3)		
		고	10(16.1)	2(8.0)	1(12.5)	3(60.0)	1(50.0)	17(16.7)		
		전체	62(100)	25(100)	8(100)	5(100)	2(100)	102(100)		
	경력	5년미만	7(11.3)	7(28.0)	1(12.5)	2(40.0)	1(50.0)	18(17.6)		21.681 .154
		5년이상~10년미만	20(32.3)	3(12.0)	2(25.0)	1(20.0)	0(0)	26(25.5)		
10년이상~20년미만		22(35.5)	6(24.0)	3(37.5)	1(20.0)	0(0)	32(31.4)			
20년이상~30년미만		9(14.5)	8(32.0)	2(25.0)	1(20.0)	0(0)	20(19.6)			
30년이상		4(6.5)	1(4.0)	0(0)	0(0)	1(50.0)	6(5.9)			
전체		62(100)	25(100)	8(100)	5(100)	2(100)	102(100)			

※ 주: ① 20%미만, ② 20%~30%미만, ③ 30%~40%미만, ④ 40%~50%미만, ⑤ 50%이상

교사가 인식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 등에서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 비율’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교원유형, 근무지, 학교급, 경력 모든 조건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 비율’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걱정 비율(학부모)

N=163,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이하	1(25.0)	6(46.2)	9(28.1)	9(30.0)	23(27.4)	48(29.4)	10.744 .217
	41세~50세이하	1(25.0)	6(46.2)	20(62.5)	17(56.7)	55(65.5)	99(60.7)	
	50세이상	2(50.0)	1(7.7)	3(9.4)	4(13.3)	6(7.1)	16(9.8)	
	전체	4(100)	13(100)	32(100)	30(100)	84(100)	163(100)	
거주지	제주시	2(50.0)	8(61.5)	15(46.9)	12(40.0)	35(41.7)	72(44.2)	2.165 .705
	서귀포시	2(50.0)	5(38.5)	17(53.1)	18(60.0)	49(58.3)	91(55.8)	
	전체	4(100)	13(100)	32(100)	30(100)	84(100)	163(100)	
국가	초	2(50.0)	7(53.8)	18(56.3)	13(43.3)	41(48.8)	81(49.7)	1.566 .992
	중	1(25.0)	4(30.8)	10(31.3)	11(36.7)	28(33.3)	54(33.1)	
	고	1(25.0)	2(15.4)	4(12.5)	6(20.0)	15(17.9)	28(17.2)	
	전체	4(100)	13(100)	32(100)	30(100)	84(100)	163(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0(0)	0(0)	2(1.3)	5(16.7)	3(3.6)	10(6.1)	24.422 .081
	100~250만원미만	2(50.0)	2(15.4)	10(31.3)	7(23.3)	21(25.0)	42(25.8)	
	250~350만원미만	0(0)	4(30.8)	8(25.0)	10(33.3)	27(32.1)	49(30.1)	
	350~500만원미만	0(0)	6(46.2)	10(31.3)	7(23.3)	27(32.1)	50(30.7)	
	500만원이상	2(50.0)	1(7.7)	2(6.3)	1(3.3)	6(7.1)	12(7.4)	
전체	4(100)	13(100)	32(100)	30(100)	84(100)	163(100)		
연령	20세~40세이하	5(41.7)	9(22.5)	20(32.3)	5(20.8)	9(36.0)	48(29.4)	9.068 .337
	41세~50세이하	5(41.7)	29(72.5)	38(61.3)	15(62.5)	12(48.0)	99(60.7)	
	50세이상	2(16.7)	2(50.0)	4(6.5)	4(16.7)	4(16.0)	16(9.8)	
	전체	12(100)	40(100)	62(100)	24(100)	25(100)	163(100)	
거주지	제주시	10(83.3)	17(42.5)	21(33.9)	9(37.5)	15(56)	72(44.2)	13.149 .011*
	서귀포시	2(16.7)	23(57.5)	41(66.1)	15(62.5)	10(40.0)	91(55.8)	
	전체	12(100)	40(100)	62(100)	24(100)	25(100)	163(100)	
지방자치단체	초	7(58.3)	18(45.0)	31(50.0)	14(58.3)	11(44.0)	81(49.7)	6.778 .561
	중	4(33.3)	16(40.0)	22(35.5)	6(25.0)	6(24.0)	54(33.1)	
	고	1(8.3)	6(15.0)	9(14.5)	4(16.7)	8(32.0)	28(17.2)	
	전체	12(100)	40(100)	62(100)	24(100)	25(100)	163(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1(8.3)	4(10.0)	4(6.5)	0(0)	1(4.0)	10(6.1)	18.680 .286
	100~250만원미만	4(33.3)	4(10.0)	17(27.4)	11(45.8)	6(24.0)	42(25.8)	
	250~350만원미만	2(16.7)	16(40.0)	16(25.8)	8(33.3)	7(28.0)	49(30.1)	
	350~500만원미만	3(25.0)	14(35.0)	20(32.3)	5(20.8)	8(32.0)	50(30.7)	
	500만원이상	2(16.7)	2(5.0)	5(8.1)	0(0)	3(12.0)	12(7.4)	
전체	12(100)	40(100)	62(100)	24(100)	25(100)	163(100)		

시·도교육청	연령	20세~40세이하	27(37.0)	15(27.3)	5(16.7)	1(33.3)	0(0)	48(29.4)	11.941 .154
		41세~50세이하	42(57.5)	33(60.0)	22(73.3)	1(33.3)	1(50.0)	99(60.7)	
		50세이상	4(5.5)	7(12.7)	3(10.0)	1(33.3)	1(50.0)	16(9.8)	
	거주지	전체	73(100)	55(100)	30(100)	3(100)	2(100)	163(100)	9.226 .056
		제주시	41(56.2)	21(38.2)	9(30.0)	1(33.3)	0(0)	72(44.2)	
		서귀포시	32(43.8)	34(61.8)	21(70.0)	2(66.7)	2(100)	91(55.8)	
	학교급	전체	73(100)	55(100)	30(100)	3(100)	2(100)	163(100)	13.132 .107
		초	38(52.1)	25(45.5)	16(53.3)	2(66.7)	0(0)	81(49.7)	
		중	25(34.2)	21(38.2)	8(26.7)	0(0)	0(0)	54(33.1)	
	월소득	고	10(13.7)	9(16.4)	6(20.0)	1(33.3)	2(100)	28(17.2)	17.400 .360
		전체	73(100)	55(100)	30(100)	3(100)	2(100)	163(100)	
		100만원미만	2(2.7)	5(9.1)	2(6.7)	0(0)	1(50.0)	10(6.1)	
100~250만원미만		20(27.4)	10(18.2)	9(30.0)	2(66.7)	1(50.0)	42(25.8)		
250~350만원미만		24(32.9)	17(30.9)	7(23.3)	1(33.3)	0(0)	49(30.1)		
사회적기금조성	연령	350~500만원미만	20(27.4)	20(36.4)	10(33.3)	0(0)	0(0)	50(30.7)	16.344 .038*
		500만원이상	7(9.6)	3(5.5)	2(6.7)	0(0)	0(0)	12(7.4)	
		전체	73(100)	55(100)	30(100)	3(100)	2(100)	163(100)	
	거주지	20세~40세이하	16(30.2)	10(32.3)	2(25.0)	0(0)	1(25.0)	29(29.9)	5.838 .212
		41세~50세이하	33(62.3)	20(64.5)	6(75.0)	0(0)	2(50.0)	61(62.9)	
		50세이상	4(7.5)	1(3.2)	0(0)	1(100)	1(25.0)	7(7.2)	
	학교급	전체	53(100)	31(100)	8(100)	1(100)	4(100)	97(100)	9.232 .323
		제주시	16(30.2)	14(45.2)	5(62.5)	1(100)	2(50.0)	38(39.2)	
		서귀포시	37(69.8)	17(54.8)	3(37.5)	0(0)	2(50.0)	59(60.8)	
	월소득	전체	53(100)	31(100)	8(100)	1(100)	4(100)	97(100)	15.953 .456
		초	25(47.2)	20(64.5)	3(37.5)	1(100)	3(75.0)	52(53.6)	
		중	21(39.6)	8(25.8)	2(25.0)	0(0)	0(0)	31(32.0)	
고		7(13.2)	3(9.7)	3(37.5)	0(0)	1(15.0)	14(14.4)		
전체		53(100)	31(100)	8(100)	1(100)	4(100)	97(100)		
100만원미만	2(3.8)	3(9.7)	1(12.5)	0(0)	1(25.0)	7(7.2)			
100~250만원미만	14(26.4)	7(22.6)	4(50.0)	1(100)	1(25.0)	27(27.8)			
250~350만원미만	15(28.3)	11(35.5)	1(12.5)	0(0)	1(25.0)	28(28.9)			
350~500만원미만	18(34.0)	10(32.3)	2(25.0)	0(0)	0(0)	30(30.9)			
500만원이상	4(7.5)	0(0)	0(0)	0(0)	1(25.0)	5(5.2)			

*p < .05

※ 주: ① 20%미만, ② 20%~30%미만, ③ 30%~40%미만, ④ 40%~50%미만, ⑤ 50%이상

학부모가 인식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 등에서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 비율'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지와 '사회적 기금 조성'의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지에 따른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13,149$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30~40%미만'(62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0%~30%'(40명), '50%이상'(25명), '40%~50%'(24명), 그리고 '20%미만'(1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회적 기금조성에서 연령에 따른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16.34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20%미만'(53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0%~30%'(31명), '30%~40%미만'(8명), 그리고 '40%~50%미만'(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부담 주체별 재정부담 적정 비율'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8>과 같다.

<표 IV-18>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 비율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chi^2(df)$	p
국 가	20%미만	7(63.6)	4(36.4)	11(100)	5.455(4)	.244
	20%~30%미만	15(53.6)	13(46.4)	28(100)		
	30%~40%미만	18(36.0)	32(47.6)	50(100)		
	40%~50%미만	33(52.4)	30(47.6)	63(100)		
	50%이상	93(52.5)	84(47.5)	177(100)		
지 방 자치단체	20%미만	14(53.8)	12(46.2)	26(100)	3.378(4)	.497
	20%~30%미만	37(48.1)	40(51.9)	77(100)		
	30%~40%미만	51(45.1)	62(54.9)	113(100)		
	40%~50%미만	33(57.9)	24(42.1)	57(100)		
	50%이상	31(55.4)	25(44.6)	56(100)		
시 · 도 교육청	20%미만	95(100)	73(100)	168(100)	6.056(4)	.195
	20%~30%미만	46(100)	55(54.5)	101(100)		
	30%~40%미만	20(40.0)	30(60.0)	50(100)		
	40%~50%미만	2(40.0)	3(60.0)	5(100)		
	50%이상	3(60.0)	2(40.0)	5(100)		
사 회 적 기금조성	20%미만	62(53.9)	53(46.1)	115(100)	4.558(4)	.336
	20%~30%미만	25(44.6)	31(55.4)	56(100)		
	30%~40%미만	8(50.0)	8(50.0)	16(100)		
	40%~50%미만	5(83.3)	1(16.7)	6(100)		
	50%이상	2(33.3)	4(66.7)	6(100)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5.455(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50%이상’(177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40%~50%’(63명), ‘30%~40%’(50명), ‘20%~30%’(28명), 그리고 ‘20%미만’(1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3.378(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교원과 학부모는 ‘30~40%미만’(113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0%~30%’(77명),

‘40%~50%’(57명), ‘50%이상’(56명) 그리고 ‘20%미만’(2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6.056(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20%미만’(168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0%~30%’(101명), ‘30%~40%’(50명), 그리고 ‘40%~50%’(5명), ‘50%이상’(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사회적 기금조성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4.558(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사회적 기금조성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20%미만’(115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 순으로 ‘20%~30%’(56명), ‘30%~40%’(16명), 그리고 ‘40%~50%’(6명), ‘50%이상’(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라.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

1) 교사의 인식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교사)

N=166, (단위: 명, %)

	구분	교육적측면	복지적측면	경제적측면	정치적측면	전체	χ^2 p
교사 유형	일반교사	27(73.0)	50(71.4)	44(77.2)	2(100)	123(74.1)	1.268 .737
	영양교사	10(27.0)	20(28.6)	13(22.8)	0(0)	43(25.9)	
	전체	37(100)	70(100)	57(100)	2(100)	166(100)	
근무지	제주시	26(70.3)	36(51.4)	24(42.1)	0(0)	86(51.8)	9.355 .025*
	서귀포시	11(29.7)	34(48.6)	33(57.9)	2(100)	80(48.2)	
	전체	37(100)	70(100)	57(100)	2(100)	166(100)	
학교급	초	19(51.4)	35(50.0)	28(49.1)	0(0)	82(49.4)	6.707 .349
	중	9(24.3)	26(37.1)	22(38.6)	1(50.0)	58(34.9)	
	고	9(24.3)	9(12.9)	7(12.3)	1(50.0)	26(15.7)	
	전체	37(100)	70(100)	57(100)	2(100)	166(100)	
경력	5년미만	5(13.5)	11(15.7)	8(14.)	2(100)	26(15.7)	21.709 .041*
	5년이상~ 10년미만	8(21.6)	16(22.9)	15(26.3)	0(0)	39(23.5)	
	10년이상~ 20년미만	18(48.6)	18(25.7)	19(33.3)	0(0)	55(33.1)	
	20년이상~ 30년미만	4(10.8)	22(31.4)	10(17.5)	0(0)	36(21.7)	
	30년이상	2(5.4)	3(4.3)	5(8.8)	0(0)	10(6.0)	
	전체	37(100)	70(100)	57(100)	2(100)	166(100)	

*p < .05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배경변인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근무지와 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근무지에 따른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9.355$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제주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복지적 측면’(36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교육적 측면’(26명), 그리고 ‘경제적측면’(2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귀포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복지적 측면’(34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면’(33명), ‘교육적 측면’(11명), 그리고 ‘정치적 측면’(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력에 따른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21.709$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경력 5년 미만 교사는 ‘복지적 측면’(11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측

면'(8명), '교육적 측면'(5명), 그리고 '정치적 측면'(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력 5년이상~10년미만 교사는 '복지적 측면'(16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15명), 그리고 '교육적 측면'(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력 10년 이상~20년미만 교사는 '경제적 측면'(19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교육적 측면'(18명)과 '복지적 측면'(18명)으로 응답하였다. 20년이상~30년미만 교사는 '복지적 측면'(22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10명), 그리고 '교육적 측면'(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30년이상 교사는 '경제적 측면'(5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복지적 측면'(3명) 그리고 '교육적 측면'(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복지적 측면'(57명)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57명), '교육적 측면'(37명), 그리고 '정치적 측면'(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표 IV-20>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학부모)

N=163, (단위: 명, %)

구분	교육적 측면	복지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이하	5(17.2)	29(35.4)	12(25.5)	2(40.0)	48(29.4)	5.825 .443
	41세~50세이하	19(65.5)	46(56.1)	31(66.0)	3(60.0)	99(60.7)	
	50세이상	5(17.2)	7(8.5)	4(8.5)	0(0)	16(9.8)	
	전체	29(100)	82(100)	47(100)	5(100)	163(100)	
거주지	제주시	14(48.3)	39(47.6)	15(31.9)	4(80.0)	72(44.2)	6.046 .109
	서귀포시	15(51.7)	43(52.4)	32(68.1)	1(20.0)	91(55.8)	
	전체	29(100)	82(100)	47(100)	5(100)	163(100)	
학교급	초	11(37.9)	42(51.2)	24(51.1)	4(80.0)	81(49.7)	4.526 .606
	중	11(37.9)	28(34.1)	14(29.8)	1(20.0)	54(33.1)	
	고	7(24.1)	12(14.6)	9(19.1)	0(0)	28(17.2)	
	전체	29(100)	82(100)	47(100)	5(100)	163(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0(0)	5(6.1)	4(8.5)	1(20.0)	10(6.1)	20.793 .053
	100~250만원미만	5(17.2)	18(22.0)	17(36.2)	2(40.0)	42(25.8)	
	250~350만원미만	5(17.2)	27(32.9)	16(34.0)	1(20.0)	49(30.1)	
	350~500만원미만	14(48.3)	26(31.7)	9(19.1)	1(20.0)	50(30.7)	
	500만원이상	5(17.2)	6(7.3)	1(2.1)	0(0)	12(7.4)	
	전체	29(100)	82(100)	47(100)	5(100)	163(100)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연령, 거주지, 학교급, 월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무상급식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21>과 같다.

<표 IV-21>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chi^2(df)$	p
교육적 측면	37(56.1)	29(43.9)	66(100)	4.137(3)	.247
복지적 측면	70(46.1)	82(53.9)	152(100)		
경제적 측면	57(54.8)	47(45.2)	104(100)		
정치적 측면	2(28.6)	5(71.4)	7(100)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중점적으로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4.137(3)$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중점적으로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복지적 측면’(152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104명), ‘교육적 측면’(6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3. 학교무상급식의 문제점 인식에 따른 발전방안

가.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

1) 교사의 인식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분석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표 IV-22>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교사)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p	
교사 유형	일반교사	20(69.0)	42(70.0)	29(90.6)	28(70.0)	4(80.0)	123(74.1)	5.918 .205
	영양교사	9(31.0)	18(30.0)	3(9.4)	12(30.0)	1(20.0)	43(25.9)	
	전체	29(100)	60(100)	32(100)	40(100)	5(100)	166(100)	
근 무 지	제주시	17(58.6)	32(53.3)	18(56.3)	18(45.0)	1(20.0)	86(51.8)	3.617 .460
	서귀포시	12(41.4)	28(46.7)	14(43.8)	22(55.0)	4(80.0)	80(48.2)	
	전체	29(100)	60(100)	32(100)	40(100)	5(100)	166(100)	
학 교 급	초	8(27.6)	32(53.3)	19(59.4)	21(52.5)	2(40.0)	82(49.4)	14.159 .078
	중	16(55.2)	21(35.0)	9(28.1)	9(22.5)	3(60.0)	58(34.9)	
	고	5(17.2)	7(11.7)	4(12.5)	10(25.0)	0(0)	26(15.7)	
	전체	29(100)	60(100)	32(100)	40(100)	5(100)	166(100)	
경 력	5년미만	4(13.8)	8(13.3)	3(9.4)	10(25.0)	1(20.0)	26(15.7)	18.986 .269
	5년이상~ 10년미만	7(24.1)	13(21.7)	8(25.0)	11(27.5)	0(0)	39(23.5)	
	10년이상~ 20년미만	11(37.9)	23(38.3)	8(25.0)	12(30.0)	1(20.0)	55(33.1)	
	20년이상~ 30년미만	7(24.1)	12(20.0)	8(25.0)	6(15.0)	3(60.0)	36(21.7)	
	30년이상	0(0)	4(6.7)	5(15.6)	1(2.5)	0(0)	10(6.0)	
	전체	29(100)	60(100)	32(100)	40(100)	5(100)	166(100)	

※ 주: ①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②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증가 불가피하기 때문, ③ 급식 외 교육에 투입될 예산 감소, ④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지속하기 어려움, ⑤ 기 타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배경변인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교원유형, 근무지, 학교급, 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분석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학부모)

N=163,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이하	14(33.3)	19(25.0)	5(29.4)	10(35.7)	48(29.4)	2.871 .825
	41세~50세이하	25(59.5)	47(61.8)	11(64.7)	16(57.1)	99(60.7)	
	50세이상	3(7.1)	10(13.2)	1(5.9)	2(7.1)	16(9.8)	
	전체	42(100)	76(100)	17(100)	28(100)	163(100)	
거주지	제주시	25(59.5)	30(39.5)	7(41.2)	10(35.7)	72(44.2)	5.568 .138
	서귀포시	17(40.5)	46(60.5)	10(58.8)	18(64.3)	91(55.8)	
	전체	42(100)	76(100)	17(100)	28(100)	163(100)	
학교급	초	21(50.0)	34(44.7)	9(52.9)	17(60.7)	81(49.7)	4.285 .638
	중	14(33.3)	27(35.5)	7(41.2)	6(21.4)	54(33.1)	
	고	7(16.7)	15(19.7)	1(5.9)	5(17.9)	28(17.2)	
	전체	42(100)	76(100)	17(100)	28(100)	163(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4(9.5)	5(6.6)	0(0)	1(3.6)	10(6.1)	15.148 .233
	100~250만원미만	12(28.6)	17(22.4)	2(11.8)	11(39.3)	42(25.8)	
	250~350만원미만	9(21.4)	26(34.2)	4(23.5)	10(35.7)	49(30.1)	
	350~500만원미만	13(31.0)	23(30.3)	10(58.8)	4(14.3)	50(30.7)	
	500만원이상	4(9.5)	5(6.6)	1(5.9)	2(7.1)	12(7.4)	
전체	42(100)	76(100)	17(100)	28(100)	163(100)		

※ 주: ①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②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증가 불가피하기 때문, ③ 급식 외 교육에 투입될 예산 감소, ④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지속하기 어려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연령, 거주지, 학교급, 월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24>와 같다.

<표 IV-24>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우려되는 점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chi^2(df)$	p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29(40.8)	42(59.2)	71(100)	15.946(4)	.003**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증가 불가피하기 때문	60(44.1)	76(55.9)	136(100)		
급식 외 교육에 투입될 예산 감소	32(65.3)	17(34.7)	49(100)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지속하기 어려움	40(58.8)	28(41.2)	68(100)		
기 타	5(100)	0(0)	5(100)		

** P < .01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15.946(4)$ 으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136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의 순으로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71명),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지속하기 어려움’(68명), ‘급식 외 교육에 투입될 예산 감소’(49명), 그리고 ‘기타’(5명)라고 응답하였다.

교사는 ‘급식 외 교육에 투입될 예산 감소’(교사 32명, 학부모 17명)라는 항목과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지속하기 어려움’(교사 40명, 학부모 28명)이라는 항목에서 학부모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부모는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학부모 42명, 교사 29명)이라는 항목과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증가 불가피하기 때문’(학부모 76명, 교사 60명)이라는 항목에서 교사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나.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

1) 교사의 인식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분석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표 IV-25>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교사)

N=166, (단위: 명, %)

	구분	3%내외	3%~5%내외	5%~10%내외	전체	χ^2 p
교사 유형	일반교사	79(72.5)	37(80.4)	7(63.6)	123(74.1)	1.739 .419
	영양교사	30(27.5)	9(19.6)	4(36.4)	43(25.9)	
	전체	109(100)	46(100)	11(100)	166(100)	
근무지	제주시	54(49.5)	27(58.7)	5(45.5)	86(51.8)	1.276 .528
	서귀포시	55(50.5)	19(41.3)	6(54.5)	80(48.2)	
	전체	109(100)	46(100)	11(100)	166(100)	
학교급	초	57(52.3)	21(45.7)	4(36.4)	82(49.4)	4.408 .354
	중	37(33.9)	18(39.1)	3(27.3)	58(34.9)	
	고	15(13.8)	7(15.2)	4(36.4)	26(15.7)	
	전체	109(100)	46(100)	11(100)	166(100)	
경력	5년미만	18(16.5)	8(17.4)	0(0)	26(15.7)	9.010 .341
	5년이상~10년미만	21(19.3)	13(28.3)	5(45.5)	39(23.5)	
	10년이상~20년미만	37(33.9)	15(32.6)	3(27.3)	55(33.1)	
	20년이상~30년미만	27(24.8)	6(13.0)	3(27.3)	36(21.7)	
	30년이상	6(5.5)	4(8.7)	0(0)	10(6.0)	
	전체	109(100)	46(100)	11(100)	166(100)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교형유형, 근무지, 학교급, 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26>과 같다.

<표 IV-26>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학부모)

N=163, (단위: 명, %)

	구분	3%내외	3%~5%내외	5%~10%내외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이하	36(31.6)	10(25.0)	2(22.2)	48(29.4)	1.402 .844
	41세~50세이하	66(57.9)	27(67.5)	6(66.7)	99(60.7)	
	50세이상	12(10.5)	3(7.5)	1(11.1)	16(9.8)	
	전체	114(100)	40(100)	9(100)	163(100)	
거주지	제주시	41(36.0)	24(60.0)	7(77.8)	72(44.2)	11.299 .004**
	서귀포시	73(64.0)	16(40.0)	2(22.2)	91(55.8)	
	전체	114(100)	40(100)	9(100)	163(100)	
학교급	초	62(54.4)	14(35.0)	5(55.6)	81(49.7)	13.306 .010**
	중	38(33.3)	12(30.0)	4(44.4)	54(33.1)	
	고	14(12.3)	14(35.0)	0(0)	28(17.2)	
	전체	114(100)	40(100)	9(100)	163(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8(7.0)	2(5.0)	0(0)	10(6.1)	7.830 .450
	100~250만원미만	35(30.7)	6(15.0)	1(11.1)	42(25.8)	
	250~350만원미만	32(28.1)	14(35.0)	3(33.3)	49(30.1)	
	350~500만원미만	30(26.3)	16(40.0)	4(44.4)	50(30.7)	
	500만원이상	9(7.9)	2(5.0)	1(11.1)	12(7.4)	
	전체	114(100)	40(100)	9(100)	163(100)	

** p < .01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배경인별로 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거주지와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거주지에 따른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11.299$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제주시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3%내외’(41명)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5%내외’(24명), 그리고 ‘5%~10%내외’(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귀포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3%내외’(73명)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5%내외’(16명), 그리고 ‘5%~10%내외’(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학부모는 ‘3%내외’(114명)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5%내외’(40명), 그리고 ‘5%~10%내외’(9명) 순으로 응답하여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지역 모든 학부모가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3%내외’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13,306$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3%내외’(62명)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5%내외’(14명), 그리고 ‘5%~10%내외’(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3%내외’(38명)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5%내외’(12명), 그리고 ‘5%~10%내외’(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3%내외’(14명)와 ‘3%~5%내외’(14명)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학부모는 ‘3%내외’(114명)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5%내외’(40명), 그리고 ‘5%~10%내외’(9명) 순으로 응답하여 초·중·고의 모든 학부모가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3%내외’로 인식하고 있었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27>과 같다.

<표 IV-27>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	전체	$\chi^2(df)$	p
3% 내외	109(48.9)	114(51.1)	223(100)	.703(2)	.703
3%~5% 내외	46(53.5)	40(46.5)	86(100)		
5%~10% 내외	11(55.0)	9(45.0)	20(100)		
10%~15% 내외	0(0)	0(0)	0(0)		
15% 이상	0(0)	0(0)	0(0)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703(2)$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3% 내외’(223명)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5% 내외’(86명), 그리고 ‘5%~10% 내외’(2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는 ‘3% ~5% 내외’(교사 46명, 학부모 40명)이라는 항목에서 학부모보다 높게 응답하였으며, 학부모는 ‘3% 내외’(학부모 114명, 교사 109명)라는 항목에서 교사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다.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

1) 교사의 인식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28>과 같다.

<표 IV-28>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교사)

N=166,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p	
교사 유형	일반교사	12(66.7)	28(84.8)	39(76.5)	34(66.7)	10(76.9)	123(74.1)	4.176 .383
	영양교사	6(33.3)	5(15.2)	12(23.5)	17(33.3)	3(23.1)	43(25.9)	
	전체	18(100)	33(100)	51(100)	51(100)	13(100)	166(100)	
근 무 지	제주시	4(22.2)	16(48.5)	33(64.7)	27(52.9)	6(46.2)	86(51.8)	10.047 .040*
	서귀포시	14(77.8)	17(51.5)	18(35.3)	24(47.1)	7(53.8)	80(48.2)	
	전체	18(100)	33(100)	51(100)	51(100)	13(100)	166(100)	
학 교 급	초	10(55.6)	16(48.5)	28(54.9)	24(47.1)	4(30.8)	82(49.4)	3.630 .889
	중	6(33.3)	13(39.4)	15(29.4)	18(35.3)	6(46.2)	58(34.9)	
	고	2(11.1)	4(12.1)	8(15.7)	9(17.6)	3(23.1)	26(15.7)	
	전체	18(100)	33(100)	51(100)	51(100)	13(100)	166(100)	
경 력	5년미만	3(16.7)	7(21.2)	6(11.8)	9(17.6)	1(7.7)	26(15.7)	25.258 .065
	5년이상~ 10년미만	4(22.2)	7(21.2)	7(13.7)	18(35.3)	3(23.1)	39(23.5)	
	10년이상~ 20년미만	2(11.1)	8(24.2)	24(47.1)	14(27.5)	7(53.8)	55(33.1)	
	20년이상~ 30년미만	7(38.9)	7(21.2)	11(21.6)	10(19.6)	1(7.7)	36(21.7)	
	30년이상	2(11.1)	4(12.1)	3(5.9)	0(0)	1(7.7)	10(6.0)	
	전체	18(100)	33(100)	51(100)	51(100)	13(100)	166(100)	

*p < .05

※ 주: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보통이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근무지에서만 $\chi^2=10.047$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 제주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찬성한다’(27명)와 ‘매우 찬성한다’(6명)로 응답하여 38.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찬성한다’(24명)와 ‘매우 찬성한다’(7명)로 응답하여 41.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29>와 같다.

<표 IV-29>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학부모)

N=163,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이하	3(15.8)	16(34.8)	13(29.5)	14(33.3)	2(16.7)	48(29.4)	11.493 .175
	41세~50세이하	15(78.9)	26(56.5)	27(61.4)	25(59.5)	16(50.0)	99(60.7)	
	50세이상	1(5.3)	4(8.7)	4(9.1)	3(7.1)	4(33.3)	16(9.8)	
	전체	19(100)	46(100)	44(100)	42(100)	12(100)	163(100)	
거주지	제주시	9(47.4)	22(47.8)	11(25.0)	25(59.5)	5(41.7)	72(44.2)	10.931 .027*
	서귀포시	10(52.6)	24(52.2)	33(75.0)	17(40.5)	7(58.3)	91(55.8)	
	전체	19(100)	46(100)	44(100)	42(100)	12(100)	163(100)	
학교급	초	9(47.4)	22(47.8)	24(54.5)	22(52.4)	4(33.3)	81(49.7)	6.375 .60522 (53.7)
	중	9(47.4)	15(32.6)	14(31.8)	12(28.6)	4(33.3)	54(33.1)	
	고	1(5.3)	9(19.6)	6(13.6)	8(19.0)	4(33.3)	28(17.2)	
	전체	19(100)	46(100)	44(100)	42(100)	12(100)	163(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3(15.8)	4(8.7)	3(6.8)	0(0)	0(0)	10(6.1)	22.358 .132
	100~250만원미만	5(26.3)	19(41.3)	7(15.9)	8(19.0)	3(25.0)	42(25.8)	
	250~350만원미만	5(26.3)	10(21.7)	16(36.4)	15(35.7)	3(25.0)	49(30.1)	
	350~500만원미만	3(15.8)	12(26.1)	14(31.8)	16(38.1)	5(41.7)	50(30.7)	
	500만원이상	3(15.8)	1(2.2)	4(9.1)	3(7.1)	1(8.3)	12(7.4)	
	전체	19(100)	46(100)	44(100)	42(100)	12(100)	163(100)	

*p < .05

※ 주 :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보통이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 배경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거주지에서만 $\chi^2=10.9317$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찬성한다’(25명)와 ‘매우 찬성한다’(5명)로 응답하여 42.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찬성한다’(17명)와 ‘매우 찬성한다’(7명)로 응답하여 2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 표-30 > 과 같다.

< 표 IV-30 >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

구분	N	M	SD	t	p
교사	166	3.05	1.122	1.273	.204
학부모	163	2.89	1.139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t=1.273$ 으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 교원(M=3.05)이 학부모(M=2.89)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라.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

1) 교사의 인식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31>과 같다.

<표 IV-31>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교사)

N=73,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χ^2 p	
교사 유형	일반교사	30(71.4)	19(70.4)	1(50.0)	1(50.0)	51(69.9)	.802 .849
	영양교사	12(28.6)	8(29.6)	1(50.0)	1 ¹ (50.0)	22(30.1)	
	전체	42(100)	27(100)	2(100)	2(100)	73(100)	
근 무 지	제주시	24(57.1)	12(44.4)	1(50.0)	0(0)	37(50.7)	3.177 .365
	서귀포시	18(42.9)	15(55.6)	1(50.0)	2(100)	36(49.3)	
	전체	42(100)	27(100)	2(100)	2(100)	73(100)	
학 교 급	초	23(54.8)	8(29.6)	1(50.0)	1(50.0)	33(45.2)	5.253 .512
	중	12(28.6)	13(48.1)	1(50.0)	1(50.0)	27(37.0)	
	고	7(16.7)	6(22.2)	0(0)	0(0)	13(17.8)	
	전체	42(100)	27(100)	2(100)	2(100)	73(100)	
경 력	5년미만	6(14.3)	5(18.5)	0(0)	0(0)	11(15.1)	13.985 .302
	5년이상~10년미만	14(33.3)	9(33.3)	0(0)	0(0)	23(31.5)	
	10년이상~20년미만	14(33.3)	8(29.6)	0(0)	2(100)	24(32.9)	
	20년이상~30년미만	7(16.7)	4(14.8)	2(100)	0(0)	13(17.8)	
	30년이상	1(2.4)	1 ¹ (3.7)	0 (0)	0 (0)	2 ² (2.7)	
	전체	42(100)	27(100)	2(100)	2(100)	73(100)	

※ 주: ①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 ② 국가의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③ 무상급식을 세금을 증가해서까지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 ④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교사유형, 근무지, 학교급, 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표 IV-32>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학부모)

N=60,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이하	13(31.7)	4(25.0)	0(0)	0(0)	17(28.3)	3.096 .797
	41세~50세이하	24(58.5)	9(56.3)	2(100)	1(100)	36(60.0)	
	50세이상	4(9.8)	3(18.8)	0(0)	0(0)	7(11.7)	
	전체	41(100)	16(100)	2(100)	1(100)	60(100)	
거주지	제주시	22(53.7)	11(68.8)	0(0)	0(0)	33(55.0)	4.919 .178
	서귀포시	19(46.3)	5(31.3)	2(100)	1(100)	27(45.0)	
	전체	41(100)	16(100)	2(100)	1(100)	60(100)	
학교급	초	22(53.7)	5(31.3)	1(50.0)	0(0)	28(46.7)	6.106 .411
	중	12(29.3)	6(37.5)	0(0)	1(100)	19(31.7)	
	고	7(17.1)	5(31.3)	1(50.0)	0(0)	13(21.7)	
	전체	41(100)	16(100)	2(100)	1(100)	60(100)	
월소득	100만원미만	0(0)	0(0)	1(50.0)	0(0)	1(1.7)	45.432 .000***
	100~250만원미만	10(24.4)	1(6.3)	1(50.0)	0(0)	12(20.0)	
	250~350만원미만	12(29.3)	7(43.8)	0(0)	0(0)	19(31.7)	
	350~500만원미만	16(39.0)	7(43.8)	0(0)	0(0)	23(38.3)	
	500만원이상	3(7.3)	1(6.3)	0(0)	1(100)	5(8.3)	
전체	41(100)	16(100)	2(100)	1(100)	60(100)		

***p < .001

※ 주: ①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 ② 국가의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③ 무상급식을 세금을 증가해서까지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 ④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월소득에서만 $\chi^2=45.432$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월소득 100만원미만 학부모는 ‘무상급식을 세금을 증가해서까지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1명)이라고 응답하였고, 월소득 100~250만원미만에서는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10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1명)과 ‘무상급식을 세금을 증가해서까지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1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월소득 250~350만원미만 학부모는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12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

가의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7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월소득 350~500만원미만 학부모는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16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7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월소득 500만원이상 학부모도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16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7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월소득 100만원이상의 모든 학부모는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41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33>과 같다.

<표 IV-33>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chi^2(df)$	p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	42(50.6)	41(49.4)	83(100)	4.599(4)	.331
국가의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27(62.8)	16(37.2)	43(100)		
무상급식을 세금을 증가해서까지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	2(50.0)	2(50.0)	4(100)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2(100)	0(0)	2(100)		
기타	0(0)	1(00)	1(100)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4.599(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가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83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라.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

1) 교사의 인식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분석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표 IV-34>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교사)

N=56,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p
교사 유형	일반교사	18(78.3)	7(87.5)	11(68.8)	4(80.0)	2(50.0)	42(75.0)	2.530 .639
	영양교사	5(21.7)	1(12.5)	5(31.3)	1(20.0)	2(50.0)	14(25.0)	
	전체	23(100)	8(100)	16(100)	5(100)	4(100)	56(100)	
근 무 지	체주시	12(52.2)	3(37.5)	5(31.3)	3(60.0)	1(25.0)	24(42.9)	2.910 .573
	서귀포시	11(47.8)	5(62.5)	11(68.8)	2(40.0)	3(75.0)	32(57.1)	
	전체	23(100)	8(100)	16(100)	5(100)	4(100)	56(100)	
학 교 급	초	13(56.5)	6(75.0)	9(56.3)	0(0)	2(50.0)	30(53.6)	10.262 .247
	중	8(34.8)	2(25.0)	5(31.3)	3(60.0)	2(50.0)	20(35.7)	
	고	2(8.7)	0(0)	2(12.5)	2(40.0)	0(0)	6(10.7)	
	전체	23(100)	8(100)	16(100)	5(100)	4(100)	56(100)	
경 력	5년미만	4(17.4)	0(0)	5(31.3)	1(20.0)	0(0)	10(17.9)	19.614 .238
	5년이상~ 10년미만	7(30.4)	1(12.5)	3(18.8)	1(20.0)	1(25.0)	13(23.2)	
	10년이상~ 20년미만	6(26.1)	2(25.0)	2(12.5)	0(0)	2(50.0)	12(21.4)	
	20년이상~ 30년미만	5(21.7)	2(25.0)	5(31.3)	3(60.0)	0(0)	15(26.8)	
	30년이상	1(4.3)	3(37.5)	1(6.3)	0(0)	1(25.0)	6(10.7)	
	전체	23(100)	8(100)	16(100)	5(100)	4(100)	56(100)	

※ 주: ①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②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③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④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 ⑤ 기타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교원유형, 근무지, 학교급, 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2)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35>와 같다.

<표 IV-35>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학부모)

N=77,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p	
연령	20세~40세 이하	9(28.1)	5(35.7)	3(15.0)	2(40.0)	4(66.7)	23(29.9)	8.128 .421
	41세~50세 이하	21(65.6)	7(50.0)	15(75.0)	3(60.0)	2(33.3)	48(62.3)	
	50세이상	2(6.3)	2(14.3)	2(10.0)	0(0)	0(0)	6(7.8)	
	전체	32(100)	14(100)	20(100)	5(100)	6(100)	77(100)	
거주지	제주시	12(37.5)	5(35.7)	7(35.0)	3(60.0)	6(100)	33(42.9)	9.771 .044*
	서귀포시	20(62.5)	9(64.3)	13(65.0)	2(40.0)	0(0)	44(57.1)	
	전체	32(100)	14(100)	20(100)	5(100)	6(100)	77(100)	
학교급	초	19(59.4)	9(64.3)	7(35.0)	3(60.0)	3(50.0)	41(53.2)	7.046 .532
	중	9(28.1)	4(28.6)	8(40.0)	2(40.0)	3(50.0)	26(33.8)	
	고	4(12.5)	1(7.1)	5(25.0)	0(0)	0(0)	10(13.0)	
	전체	32(100)	14(100)	20(100)	5(100)	6(100)	77(100)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2(14.3)	1(5.0)	2(40.0)	3(50.0)	8(10.4)	27.730 .034*
	100~250만원미만	14(43.8)	2(14.3)	6(30.0)	2(40.0)	1(16.7)	25(32.5)	
	250~350만원미만	10(31.3)	4(28.6)	5(25.0)	1(20.0)	19(16.7)	21(27.3)	
	350~500만원미만	7(21.9)	5(35.7)	7(35.0)	0(0)	0(0)	19(24.7)	
	500만원 이상	1(3.1)	1(7.1)	1(5.0)	0(0)	1(16.7)	4(5.2)	
전체	32(100)	14(100)	20(100)	5(100)	6(100)	77(100)		

*p < .05

※ 주: ① 국민의 일일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②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③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④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 ⑤ 기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거주지와 월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거주지에 따른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9.771$ 로 p < .05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거주지에 따른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제주시지역의 학부모는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12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7명), 그리고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귀포시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12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7명), 그리고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시지역 학부모 모두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12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7명), 그리고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월소득에 따른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27.730$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월소득 100만원미만 학부모는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2명)와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2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1명)라고 응답하였다. 월소득 100~250만원미만에서는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14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6명) 그리고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2명)와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월소득 250~350만원미만 학부모는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10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5명),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4명), 그리고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월소득 350~500만원미만 학부모는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7명)와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7명)서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5명)라고 응답하였다. 월소득 500만원이상 학부모는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1명)와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1명),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1명)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32명)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20명), ‘국가

의 재원이 부족하므로'(14명), 그리고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가정경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 '무상급식으로 인한 세금 증가 반대'(3명), '가계 경제적 부담'(5명) 등이 있었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36>과 같다.

<표 IV-36>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chi^2(df)$	p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23(41.8)	32(58.2)	55(100)	.654(4)	.957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8(36.4)	14(63.6)	22(100)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16(44.4)	20(55.6)	36(100)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	5(50.0)	5(50.0)	10(100)		
기타	4(40.0)	6(60.0)	10(100)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654(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국가가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가 불가피하므로'(55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36명),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4명), 그리고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10명) 이라고 응답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여 학교무상급식 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제주지역 영양교사 배치교의 교사 166명과 학부모163명 총 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t=-2.307$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사($M=3.75$)보다 학부모($M=4.03$)가 ‘중학교까지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높게 응답하였다.

교사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성’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경력에서만 $\chi^2=44.144$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에,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성’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연령, 거주지, 학교급, 월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6.254(3)$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대상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10.540(5)$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84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 순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76명), ‘유치원+초등학교’(69명), ‘초등학교+중학교’(47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39명), 그리고 ‘초등학교’(14명) 순으로 응

답하였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근무지($x^2=13.565$ 로 $p < .05$)와 학교급($x^2=20.526$ 로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반면에,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연령, 거주지, 학교급, 월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x^2(df)=6.495(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101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의 순으로 ‘학교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94명), ‘기존 선별적 급식에서 학생들의 느꼈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79명), 그리고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51명)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근무지에서만 $x^2=9.489$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에 학부모가 인식하는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학교급에서만 $x^2=20.873$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x^2(df)=4.765(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236명). 다음 순으로 ‘국가(교육과학기술부)’(76명),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10명), ‘지방자치단체’(4명) 그리고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3명)서라고 응답하였

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 5.455(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50%이상’(177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3.378(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30~40%미만’(113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6.056(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20%미만’(168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사회적 기금조성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4.558(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사회적 기금조성의 재정부담 적정비율’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20%미만’(115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교사가 인식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 등에서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 비율’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교원유형, 근무지, 학교급, 경력 모든 조건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학부모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사회적 기금 조성을 통해’ 등에서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 적정 비율’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교원유형, 근무지, 학교급, 경력 모든 조건에 대하여 통계적으

로 의미가 없었다.

넷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중점적으로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4.137(3)$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중점적으로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복지적 측면’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152명), 다음 순으로 ‘경제적 측면’(104명), ‘교육적 측면’(66명) 순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근무지와 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반면에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정착에 고려할 측면’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연령, 거주지, 학교급, 월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15.946(4)$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교원과 학부모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증가 불가피하기 때문’(136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의 순으로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71명),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지속하기 어려움’(68명), ‘급식 외 교육에 투입될 예산 감소’(49명), 그리고 ‘기타’(5명)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사는 ‘급식 외 교육에 투입될 예산 감소’(교사 32명, 학부모 17명)라는 항목과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지속하기 어려움’(교사 40명, 학부모 28명)이라는 항목에서 학부모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에, 학부모는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학부모 42명, 교사 29명)이라는 항목과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증가 불가피하기 때문’(학부모 76명, 교사 60명)이라는 항목에서 교사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703(2)$ 로 $p < .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3% 내외’(223명)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 순으로 ‘3%~5% 내외’(86명), 그리고 ‘5%~10% 내외’(20명)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는 ‘3% ~5% 내외’(교사 46명, 학부모 40명)라는 항목에서 학부모보다 높게 응답하였으며, 학부모는 ‘3% 내외’(학부모 114명, 교사 109명)라는 항목에서 교사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t=1.273$ 으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 교사($M=3.05$)가 학부모($M=2.89$)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넷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4.599(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가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83명)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섯째,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chi^2(df)=.654(4)$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가 학교무상급식으로 세금 증가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국민의 일시적인 세금 증가가 불가피하므로’(55명)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의 순으로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36명),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4명), 그리고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10명)라고 응답하였다.

2.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요약을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무상급식제도를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과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높게 응답하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까지 급식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3학년도 교육부 국정과제 실천 계획에 따르면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 2014년부터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실시 추진을 제시하고 있어, 고교 무상 교육에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고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무상급식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과 ‘학교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재정 지원을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부담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3학년도 3월 각 시도별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을 보면 도의회 및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 역시 2013학년도부터 중학교 전면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을 놓고 도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은 재정 부담의 이유로 순차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2012년 12월 도의회에서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함으로써 중학교까지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자치단체와 도교육청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학생들이 건강 관리를 책임져야 하고 국가 정책으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도별 무상급식비 지원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재정 지원이 국가의 책임하

에 이루어져야 하며, 무상급식비 지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무상급식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재정부담 적정 비율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 모두 5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을 보편적 복지와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이는 학교 교육비 영역 안에 학교 급식비도 포함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세금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세금 증가 범위에 대하여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3%내외를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고,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의 우려되는 점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증가가 불가피’,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무상급식으로 인한 세금 증가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이유도 국민의 세금 증가가 불가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세금 증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학교무상급식 정착을 위해서는 세금증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국가의 책무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국가는 안정적으로 무상급식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 학교급식 경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표본조사

를 통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제주지역과 여건이 다른 지역의 학교무상급식 제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 무상급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나, 학생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입장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연구 결과를 무상급식 제도 전체 이해 당사자의 견해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무상급식비 재원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견해와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학생들의 견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무상급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발전해 나가야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국가의 책무성 차원에서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재정 확보는 불가피한 것으로 재정 확보 방안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새정부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 2014년부터 점진적인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 마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교무상교육 범위속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향후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은희(2011). 무상급식에 관한 교직원 인식조사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민(2005). 제주도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과정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회현(2010).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이며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방안 및 지역 농산물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교급식 실시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2002). 학교급식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일본, 영국의 학교급식 실태
- 교육부(2013).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 김민희(2013). 울산광역시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의 인식도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곤(2011).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사람과정, 2. 136-147.
- 김서희(2012).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후 학교 급식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 변화.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12). 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방안: 제주도지역 영양(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춘진(2012). 3년새 무상급식 학교 4.2배 늘어 전국 초등학교의 91% 무상급식 실시. 보도자료.
- 김한순(2011). 우리나라 학교급식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동보건사회부, 「학교급식비용 보조 주정부 기금지원 행정 지침 ("Kein Kind Ohne Mahlzeit")」 2010. 4. 9.
-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학교법(Schulgesetz NRW-SschulG: Schul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2010. 4. 9.
- 박대현(2010).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시혜자, 송승민, 이유현(2011). 무상급식 수혜 대상인 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비빈곤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3). 407-416
- 백승희(2010).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급식으로서의 무상 학교급식 확대,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7-18. 서울: 대한민국국회.
- 박희근(2009).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대한민국국회
- 안민석의원, 친환경무상급식을위한경기운동본부(2009). 무상학교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경기: 친환경무상급식을위한경기운동본부.
- 양지선(2011).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덕난(2010). 학교급식경비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의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1). 185-207.
- 이덕난(2012). 주요 6개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덕난(2010). 독일 전일제학교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및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제20권제2호. 51-73
- 이덕난, 한지호, 최윤정(2011). 2010년 미국 학교급식 경비지원 관련법률 제·개정 의의 의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2). 289-311
- 이선희(2011). 초·중학교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2009).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교육과학기술부.
- 임순미(2011). 무상급식논쟁을 통해본 보수의 담론·진보의 담론. 한국정치학회보, 45(2). 251-318.
- 정숙임(2012).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정순(2001). 세계의 학교급식 현황.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2(1). 1-18.
- 한은석(2011). 경기도 학교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 조직구성 및 2011년도 교육통계연보.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자치위원회(2012). 무상급식 추진 정책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0). 2010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a). 2011학년도 무상급식비 지원 계획 문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b). 201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a). 201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b). 2012학년도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 지원 계획 문서
- 탐라교육원(2010). 영양교사 1급 자격연수 I. 제주: 탐라교육원.
- 하봉운(2010). 학교급식무상성 논쟁의 쟁점과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17(3). 137-157.
- Bartlett, Susan et al(2008). School Lunch Breakfast Cost Study-II,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8, P. xii.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FNBE), School meals in Finland: Investment in learning, Helsinki, FNBE, 2008.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09). School Meal Programs: Experiences of the States and Districts that eliminated Reduced-pricen Fees, GAO-09-584, Report to the Chairman,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dor, House of Representatves, Washington, D. C.
- Harper, Clare et al(2008). The provision of school food in 18 countries, Sheffield, School Food Trust, July 2008.
- HAW Hamburg(2010). "IN FORM: Qualitätsstandards Für die Verpflegung in Schulen und Betrieben-erste Erfahrungen"(Apr. 7, 2010).
- National Health Service, "About Healthy Start Scheme" (Apr. 10, 2010).
- Ministry of Education, "Financing of education"(Apr. 12, 2010.)

- Nelson, Michael et al(2009). Fourth annual survey of take-up of school lunches in England, Sheffield, School Food Trust, October 2009.
- Nwison, Michael et al(2010). Fourth annual survey of take up school lunches in England 2008-2009: Key Findings from further analyses, Sheffield. School food Trust, January 2010.
- School Food Trust(2010). 'Free school meais: Current criteria for free school meals'(Apr. 7, 2010).
- Stallings, Virginia A. et al(2010). School Meals: Building Blocks for Healthy Children, Washington, D. C., 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
- Skolverket, Children(2010). pupils and staff National level: Sweden's Official Statistics onpre-school activities, school-age child care, school and adult education, Stockholm, Skolverket, 2010.
- Skolmatens vanner(2010). "nya skolmatssiffror visar stora skillnader mellan kommunerna"(Mar. 29, 2010).
-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2009). The School Breakfast Program, Washington, D. C., USDA, December 2009.
- Viadero, Debra(2010). Health Problems Fuel Achievement Gaps, Study Says, Education Week, Mar. 15, 2010.

〈참고 사이트〉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제주특별자치도(<http://ww.jje.go.kr>)

교육과학기술부(<http://mest.go.kr>)

교육부(<http://www.moe.go.kr>)

스웨덴, 의회 공식 홈페이지, "Sveriges riksdag", 2010. 3. 12.

스웨덴, 통계청 공식 홈페이지, "Statistiska centralbyrån".

스웨덴, 「I skollagen 1997」

위키백과사전 (<http://www.daum.net>)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Opetushallitus Utbildningsstyrelsen”,
2010. 4. 22.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n the Full Enforcement of the School Free Meal
System in Jeju

Hyun, Gil Ah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In Hoi

Disputes over ‘the free meal system’ were highlighted around the local election on June 2nd, 2010, and the system was fully or partly enforced nationwide with the school opening in 2011 as its start. In Jeju, too, from the school opening in March, 2011 as its start, the free meal system was enforced at middle schools located in eup or myeon area as well as elementary schools including kindergartens (private & attached kindergartens); however, in 2012, for the lack of finances, it could not be fully extended to middle schools, but it was enforced up to third graders at middle schools located in dong area.

In 2012,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Office of Education and Jeju Provincial Assembly were in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over whether the free meal system should be fully extended to middle schools in 2012.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Office of Education supported gradual extension as it was hard to secure the budget for it while Jeju Provincial Assembly insisted the full enforcement. After the repeated disputes, it was decided to enforce it fully at the special meeting of Jeju Provincial Assembly in December, 2012. Thus, according to the decision-making, from 2013, the school free meal system is fully enforced for the subjects of compulsory education up to middle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n the school free meal system in Jeju, draw developmental measures for it, and find out ways to develop the school free meal system. To attain the goal, a survey was performed to the teachers and parents of the schools having nutrition teachers in Jeju, and among the questionnaire sheets collected, 166 from teachers and 163 from paren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about 'necessity for the full induction of the school free meal system', both teachers and parents recognize it is needed to induce the school free meal system fully up to middle schools. About 'the reason for the full induction of the school free meal system', they think it is needed sinc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fall under 'compulsory education'. About 'whether the range of subjects for the school free meal system should be extended', most of them select 'from kindergarten to high school', so it is needed to extend the school free meal system from kindergarten to high school.

Second, about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school free meal cost', both teachers and parents mostly recognize 'it is because students' health can be managed from the national dimension'. About 'subjec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inances of school free meals', they choos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bout 'the proper ratio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when the school free meal system is

fully enforced', they choose 'over 50%', and about 'the aspects to be intensively considered to establish the school free meal system', they select 'the aspects of welfare'.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chool free meal cost, and it is needed to increase financial support.

Third, about 'the possible problems resulted from the induction of the school free meal system', both teachers and parents choose 'unavoidable tax increase to secure the finances'. About 'the range of tax increase to support the school free meal system', most of them think '3% or so' is the most appropriate. About 'whether they agree on the tax increase resulted from the school free meal system', teachers agree more than parents, and about 'the reason why they agree on the tax increase resulted from the school free meal system', most of them think 'it is natural for the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for food service expenses', and about 'the reason why they do not agree on the tax increase resulted from the school free meal system', most of them recognize 'it is unavoidable for the people to pay more tax temporarily'.

【부록 1】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을 전공하는 학생 현길아입니다.

본 설문지는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주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제도에 관한 교원과 학부모 인식 조사 연구를 통해 학교무상급식 제도의 안정화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교육발전과 학생지도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설문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분석결과는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약속드립니다 (통계법 제 33조 및 제34조).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 이 인 회 교수

석사과정 : 현 길 아

연 락 처 : 010-3690-3976

이 메 일 : hga611@hanmail.net

3. 현재 중학교까지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1. 현재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에 ①,②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 ①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 ②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 ③ 무상학교급식으로 학부모님의 소득 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 ④ 국가의 교육 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 ⑤ 기타 (_____)

3-2 현재 전면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에 ④,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 ① 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 ②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급식비 부담을 해도 되기 때문에
- ③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만 지원해도 되기 때문에
- ④ 학교무상급식 제도 도입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기 때문에
- ⑤ 기타 (_____)

4. 학교무상급식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 ②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증가 불가피하기 때문
- ③ 급식 외 교육에 투입될 예산 감소
- ④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지속하기 어려움
- ⑤ 기타 (_____)

5. 학교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을 준다 ② 약간 도움을 준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6. 학교무상급식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유치원 + 초등학교 ③ 초등학교 + 중학교
 ④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⑤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⑥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7. 학교무상급식제도가 안정화되고 정착하는데 어떤 측면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적 측면 ② 복지적 측면 ③ 경제적 측면
 ④ 정치적 측면 ⑤ 기 타 (_____)

II. 학교급식비 부담 및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계신 내용과 가까운 번호에 "V"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과거에 학교급식비 납부에 대한 부담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부담을 느꼈다 ② 부담을 느꼈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았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9. 제주지역에서는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하여 유치원·초등학교·읍면지역 중학교·특수학교와 동지역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
 ② 지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
 ③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

- ④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
- ⑤ 기타 (_____)

10.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1. 국가가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급식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 ②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기존 선별적 급식비 지원 학생들이 느꼈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 ④ 학교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 ⑤ 기타 (_____)

12.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재정부담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교육과학기술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③ 지방자치단체
- ④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⑤ 사회적 기금을 조성을 통해

13.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부담 주체별 재정부담의 적정 비율을 아래표에서 선택하여 주세요.

부담주체	20% 미만	20% ~ 30%미만	30% ~ 40%미만	40% ~ 50%미만	50%이상
국가	①	②	③	④	⑤
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④	⑤
사·도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기금조성	①	②	③	④	⑤

17. 학교무상급식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 ④ 반대한다 ⑤ 매우 반대한다

17-1. 세금의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번에

①,②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 ①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
- ② 국가의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 ③ 무상급식을 세금을 증가해서까지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
- ④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 ⑤ 기 타 (_____)

17-2. 세금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번에 ④,⑤

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 ① 국민의 일시적 세금 증가는 불가피 하므로
- ②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 ③ 더 나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 ④ 더 나은 급식의 질을 위하여
- ⑤ 기 타 (_____)

18. 학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해 세금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얼마까지 찬성하십니까?

- ① 0-3% 내외 ② 3-5% 내외 ③ 5 -10% 내외
- ④ 10-15% 내외 ⑤ 15%이상

Ⅲ.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에 “V”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귀하께서는?	① 교원 ② 학부모
20	귀하의 연령은?	① 20~30세 이하 ② 31~40세 이하 ③ 41~50세 이하 ④ 51~60세 이하 ⑤ 60세 이상
2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2	귀하의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23	교원의 유형은?	① 교장 ② 교감 ③ 교사 ④ 영양교사
24	근무지는 ? (교원만 응답)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⑤ 도서 지역
25	근무하는 학교급별은? (교원만 응답)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26	교사의 경력은? (교원만 응답)	① 5년 미만 ② 5년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이상 ~ 20년미만 ④ 20년이상 ~ 30년미만 ⑤ 30년이상
27	거주지는 ? (학부모만 응답)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⑤ 도서 지역
28	자녀의 학교급은? (자녀가 둘이상일 경 우 중복 선택 가능)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기타
29	가구 월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50만원 미만 ③ 250~350만원 미만 ④ 350~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학교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기타 통계 자료

<부록 2-1> 학교급식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예	166(50.6)	162(49.4)	328(100)
아니오		1(100)	1(100)

<부록 2-2> 학교급식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X ² (df)	P
학교급식도 교육활동의 일 부분이기 때문	67(67.0)	33(33.0)	100(100)		
급식활동을 통해 식사예절 을 배우기 때문	6(60.0)	4(40.0)	10(100)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식사 를 제공하기 때문	72(48.3)	77(51.7)	149(100)	24.494(4)	.000***
모든 학생이 차별없는 동 등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18(35.3)	33(64.7)	51(100)		
도시락 싸는 부모님의 부 담을 덜어주기 때문	3(16.7)	15(83.3)	18(100)		

*** P < .001

<부록 2-3>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생각

구분	N	M	SD	t	P
교사	166	3.96	1.014		
학부모	163	4.19	.953	-2.086	.038*

* P < .05

<부록 2-4> 학교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 도움 여부

구분	N	M	SD	t	P
교사	166	4.02	1.000		
학부모	163	4.08	1.000	-.559	.576

<부록 2-5> 과거 학교급식비 납부 부담 여부

구분	N	M	SD	t	P
교사	166	2.63	.884	2.854	.005**
학부모	163	2.36	.887		

** P < .01

<부록 2-6> 제주지역에서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교사	학부모	전체	X ² (df)	P
정부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	72(44.4)	90(55.6)	162(100)	5.441(4)	.245
지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	66(55.9)	52(44.1)	118(100)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	7(50.0)	7(50.0)	14(100)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	18(58.1)	13(41.9)	3(100)		
기타	3(75.0)	1(25.0)	4(100)		

* P < .05

<부록 2-7> 국가의 학교무상급식 지원의 중요성

구분	N	M	SD	t	P
교사	166	4.16	.869	-1.522	.129
학부모	163	4.31	.849		

<부록 2-8> 학생 1인 1식당 학교급별 학교급식비 적정 금액

(단위: 명, %)

학교 급별	급식 형태	적정금액	교사	학부모	전체	X ² (df)	P
초등 학교	일반 급식비 (평균)	2,000원 이하	8(47.1)	9(52.9)	17(100)	2.272(4)	.686
		2,000원 ~ 2,500원	84(49.1)	87(50.9)	171(100)		
		2,500원 ~ 3,000원	66(53.7)	57(46.3)	123(100)		
		3,000원 ~ 3,500원	7(41.2)	10(58.8)	17(100)		
		3,500원 이상	1(50.0)	1(50.0)	2(100)		
	친환경 급식비 (평균)	2,000원 이하	8(42.1)	11(57.9)	19(100)	8.164(4)	.086
		2,000원 ~ 2,500원	36(42.9)	48(57.1)	84(100)		
		2,500원 ~ 3,000원	99(57.2)	74(100)	173(100)		
		3,000원 ~ 3,500원	19(40.4)	28(59.6)	47(100)		

중 학 교	일반 급식비 (평균)	3,500원 이상	4(66.7)	2(33.3)	6(100)	.753(4)	.945
		2,000원 이하	3(50.0)	3(50.0)	6(100)		
		2,000원 ~ 2,500원	14(48.3)	15(51.7)	29(100)		
		2,500원 ~ 3,000원	67(52.8)	60(47.2)	127(100)		
		3,000원 ~ 3,500원	58(49.2)	60(50.8)	118(100)		
	친환경 급식비 (평균)	3,500원 이상	24(48.0)	26(52.0)	50(100)	1.877(4)	.758
		2,000원 이하	5(41.7)	7(58.3)	12(100)		
		2,000원 ~ 2,500원	15(45.5)	18(54.5)	33(100)		
		2,500원 ~ 3,000원	58(55.2)	47(44.8)	105(100)		
		3,000원 ~ 3,500원	76(48.7)	80(51.3)	156(100)		
고 등 학 교	일반 급식비 (평균)	3,500원 이상	12(52.2)	11(47.8)	23(100)	.707(4)	.950
		2,000원 이하	3(60.0)	2(40.0)	5(100)		
		2,000원 ~ 2,500원	14(48.3)	15(51.7)	29(100)		
		2,500원 ~ 3,000원	67(52.8)	60(47.2)	127(100)		
		3,000원 ~ 3,500원	58(49.2)	60(50.8)	118(100)		
	친환경 급식비 (평균)	3,500원 이상	24(48.0)	26(52.0)	50(100)	5.067(4)	.280
		2,000원 이하	5(41.7)	7(58.3)	12(100)		
		2,000원 ~ 2,500원	10(45.5)	12(54.5)	22(100)		
		2,500원 ~ 3,000원	45(61.6)	28(38.4)	73(100)		
		3,000원 ~ 3,500원	62(46.6)	71(53.4)	133(100)		
	3,500원 이상	44(49.4)	45(50.6)	89(100)			